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 업 설 명 서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도시환경위원회)

김 포 시

목 차

■ 담당관실

1. 안전기획관	3
----------------	---

■ 미래전략국

2. 미래전략과	19
3. 미래도시건설과	29
4. 도시디자인과	33
5. 철도과	51

■ 환경국

6. 환경정책과	73
7. 기후에너지과	77
8. 환경지도과	93
9. 자원순환과	97
10. 해양하천과	105

■ 교통건설국

11. 교통정책과	141
12. 대중교통과	149
13. 건설도로과	185
14. 도로관리과	191

목 차

■ 도시주택국

15. 도시계획과	207
16. 주택과	219
17. 건축과	227
18. 토지정보과	237

■ 농업기술센터

19. 농업정책과	245
20. 축산과	291
21. 농업진흥과	315
22. 기술지원과	319

■ 공원도시사업본부

23. 공원과	329
24. 산림과	345
25. 클린도시과	359

담당관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안전기획관
기 정 액	1,496,719천원	요 구 액	1,063,09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259	226	50	0	176	-33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38	106	0	0	106	-132	김포시자활방재단 및 예비군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잔액 반환 수입
기타수입/그외수입 ◎그외수입	21	120	50	0	70	99	주민대피시설 투표소 사용료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성립전)

사업기간	2025. 1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한파쉼터 44개소, 누구나잠깐한파쉼터 25개소 등		
사업목적	한파취약계층 등 시민의 겨울철 한랭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한용품 구매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도 100%)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한파대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50,000	0	0	0	0	50,000	30,000	
국비		0						0	
도비	20,000	50,000					50,000	3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	201-01 사무관리비	·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핫팩, 목도리 등) 구입 등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옥외근로자·농축어업인 등 한파 취약계층 대상 소모성 방한용품 구매 및 배부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등 관련 부서 및 한파쉼터(44개소)·누구나잠깐한파쉼터(25개소)에 방한용품 배부·비치 예정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자연재난과-25946(2025.10.30.)호와 관련 한파대책비 도비보조금 교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25년 4회 추경 편성
 - 2025. 11.~ 12.: 방한용품 구매 및 배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핫팩 37,000개 구매 · 한파쉼터 응급대피소 운영 물품 구입(극세사 담요, 간이침대), 누구나잠깐한파쉼터 홍보 배너, 현판 제작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0,000	9,922	9,660	418	
2025	59,660	9,563	-	50,09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기획관	재난대응팀장 최태수	담당자	행정9급 박홍인	전화	5486
-----	-------	------------	-----	----------	----	------

8.3.~14.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성립전)

사업기간	2025. 09. 23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05건(소상공인 132건, 침수주택수리비 54건, 농작물·산림작물 19건)		
사업목적	8.13~14. 호우로 인해 주택·소상공인·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66조 제3항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당조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군·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군·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군·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12,922	0	0	0	0	1,012,922	1,012,922	
국비		723,516					723,516	723,516	
도비		289,406					289,406	289,406	
시비		0					0	0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12,922	
8.3.~14.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 침수주택수리비 위로금: 3,500,000원 * 41건 * 재난지원금 예비비 기지급 = 143,500 · 침수주택수리비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7,000,000원 * 13건 = 91,000 · 소상공인 위로금: 5,000,000원 * 105건 * 재난지원금 예비비 기지급 = 525,000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8,000,000원 * 27건 = 212,116 · 농작물·산림작물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원금 단가 * 19건 = 41,306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부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지출 (3,884천원)

□ 예산요구 사유

- 8.13.~14. 호우로 인해 주택·소상공인·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 편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9.22일)」으로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주택침수 350만원, 소상공인 500만원) 외 추가로 위로금(주택침수 350만원, 소상공인 500만원)을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23. : 8.3.~14. 호우 피해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 통보
 - 2025.09.23. : 8.3.~14.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교부 결정 통지
 - 2025.09.24. : 국·도비 교부 즉시 신속 집행 보도자료 배포
 - 2025.09.26. : 8.13.~14. 호우 피해주민 복구 관련(재난지원금 위로금) 국고보조금(재난대책비) 성립전 예산 편성
 - 2025.10.07. : 8.3.~14.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2025.10.23. : 1,008,806천원 지급(204건)
 - 2025.10.27. : 4,116천원 지급(1건) ※ 국·도비 집행을 1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8.13~14. 호우피해 재난대책비(국·도비) 1,012,922천원 ※ 집행을 10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12,922	1,012,922	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기획관	재난대응팀장 최태수	담당자	행정8급 김정관	전화	2915
-----	-------	------------	-----	----------	----	------

25년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8. ~ 2026. 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리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로법상 도로 100km		
사업목적	지반침하의 원인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조사하여 지반침하 발생 원인 분석 및 방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空洞)조사 5년 1회 이상] *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 제83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00,000	0	0	0	200,000	0	200,000	
국비		100,000				100,000		100,000	
도비		30,000				30,000		30,000	
시비		70,000				70,000		7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용역	401-01 시설비	· 차량용 노면 하부 탐사 및 자료 처리 : - 100km(1차선기준) × 1,900,000원/Km	= 190,000	
		· 정밀 지반 탐사 및 복구(천공 및 내시경 촬영) : - 20개소(예상) × 500,000원/개소	= 1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른 시스템 점검 및 탐사 노선도 선정 과정으로 인한 착수 지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8. ~ 2025. 09.: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 2025. 09. ~ 2025. 10.: 업체 선정
 - 2025. 11. ~ 2025. 12.: GPR 장비를 활용한 현장조사 수행
 - 2025. 12. ~ 2026. 01: 공동(空洞) 복구
 - 2026. 02. : 최종보고서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70KM 탐사 / 68개소 공동신속복구
2024	- 해당없음
2025	- 2025. 08. ~ 2025. 09.: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 2025. 09. ~ 2025. 10.: 업체 선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97,152	745,254	-	51,898	
2024	-	-	-	-	
2025	200,000	-	-	2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기획관	안전점검팀장 이상원	담당자	방재9급 정우람	전화	5498
-----	-------	------------	-----	----------	----	------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87, 687-1
사업규모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1개소		
사업목적	접경지역에 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국50%,도15%,시35%)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중양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930,000	930,000	0	0	0	0	887,069	
국비		465,000	465,000					443,535	
도비		139,500	139,500					133,060	
시비		325,500	325,500					310,474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887,069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401-01 시설비	· 공사비 : 810,000,000원*1개소	= 810,000	
		· 철거비 : 46,800,000원*1개소	= 46,800	
		· BF인증용역 : 22,456,000원*1개소	= 22,456	
		· 기타부담금 : 7,813,000원*1개소	= 7,813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현재 신축 예정부지에 기존 설치된 농업용 창고 철거 및 농지 원상복구 절차 이행이 필요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절차 이행 기간 소요됨
-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물 신축허가 이행 후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계약심사이행 필요함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중으로 연내 공사 착수가 불가하며, 절차 완료 후 공사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필요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	-	-	-	-	-	-	-	-	-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심의
 - 2025.04.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5.06. : BF인증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5.11. : 기존건축물 석면조사 및 해체
 - 2025.12. : 경기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01.: 공사업체 입찰 공고
 - 2026.02.~12.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실시설계용역 착수('25.04.) - BF인증 용역 계약 및 착수('25.0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930,000	42,271	-	887,72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기획관	민방위팀장 이승묵	담당자	행정7급 박종임	전화	2363
-----	-------	-----------	-----	----------	----	------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관련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7. ~ 2026. 3.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목적	소음영향도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피해 지역의 소음 발생 시간, 크기, 주파수, 방향 등을 측정·분석하여 소음 피해 규모, 피해 주민 수,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임(기초자료)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도비 50%, 시비 50%)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시장·군수”라 한다)는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30,000	0	0	0	130,000	0	130,000	
국비		0							
도비		65,000				65,000		65,000	
시비		65,000				65,000		65,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0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관련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	207-01 연구용역비	· 대남방송 소음피해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1식 : 130,000,000원 =	13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대남방송 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상액 산정을 위해 3개 시군(김포·파주·강화)에 동일 기준 적용 필요 (행안부 요구 사항 ▶ 강화군 측정값을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 현재 강화군에서 진행 중인 측정사업 준공이 2025.12.31. 예정으로 금년 내 기준값 확보 불가 (우리 시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 시기 ▶ 2026년도 추진 불가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대남방송 소음피해 관련 소음영향도 용역 발주
 - 2025. 11. : 용역 업체 선정 / 계약
 - 2025. 12. : 소음 데이터 제공 / 용역 업체 분석, 주민설명회 등
 - 2026. 1.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검토 등
 - 2026. 3.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제출(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30,000	-	-	13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안전기획관	민방위팀 이승묵	담당자	전문경력관 나군 서현준	전화	2361
-----	-------	----------	-----	--------------	----	------

미래전략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미래전략과
기 정 액	15,898천원	요 구 액	134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134	0	0	134	134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도 신용카드 계좌 이자수입	0	5	0	0	5	5	2025년도 신용카드 계좌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편성(5,910원)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하이패스 선불카드 환불에 따른 반환금	0	129	0	0	129	129	2025년 공용차량 반납으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미사용분 환불 및 반납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등
사업규모	유관 기관·기업 협력사업 2회 실시		
사업목적	차세대 교통수단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UAM의 상용화 기반 구축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이하 각 호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 수렴	
	해당조례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호
		제4조(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0,000	70,000	130,000	0	10,000	0	-70,000	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	70,000	130,000		10,000		-70,000	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도심항공교통 (UAM) 체계 구축	207-01 연구용역비	. 시범운용구역 구축 및 운영 계획수립 용역비 ※ (경정) 0원 - (기정) 70,000,000원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정부 시범사업 대응 용역비 편성하였으나, 정책 추진 지연 및 용역 지연

□ 예산증감 사유

- 세계적 기술개발 동향 등 사업여건 변화 반영하여 정부 UAM 운용계획 변경
 - ‘21.9. 「K-UAM 운용개념서 1.0」 관련 「K-UAM 운용개념서 1.5」 개정 발표(‘25.8.)
 - 상용화 목표 순연(당초 2025년 → 2028년 이후) 및 사업모델 다각화 등
- ⇒ 향후 정책 동향에 맞춰 추경 등 예산확보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원안가결								
일자	2025.11. 반영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2. : 김포시-한국공항공사 업무협약 체결(도심항공모빌리티 도시 체계 구축 등)
 - 2023. 9. : UAM 공역 및 항로분석 용역 착수
 - 2023. 11. : 드론·UAM 엑스포 참가
 - 2024. 3. : 김포시-KTL 업무협약 체결(UAM 등 미래전략 산업 육성)
 - 2024. 6. : UAM 산업육성 전략 포럼 개최
 - 2024. 7. : UAM 공역 및 항로분석 용역 준공
 - 2024. 10. :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참가
 - 2025. 3. : 김포시 UAM 유관분야 네트워킹 기업 모집 및 협업
 - 2025. 6.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참여
 - 2025. 10. : Seoul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 2025. 11. : 2025 UAM 산업육성 전략 포럼 개최(예정)
 - 2026.1~12. : 미래모빌리티 전문 전시회 참가 및 포럼 개최(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2. : 김포시-한국공항공사 업무협약 체결(도심항공모빌리티 도시 체계 구축 등 지역과 공항의 상생발전) · 2023.9. : ‘도심항공교통 안전운항을 위한 공역 및 항로 분석용역’ 착수 · 2023.11. : 제1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 참가(국토교통부 비행실증행사 병행)
2024	· 2024.3. : 김포시-KTL 업무협약 체결(UAM 등 미래전략 산업 육성) · 2024.6. : 김포시 UAM 산업육성 전략 포럼 개최(김포시·KTL 공동개최) · 2024.7. :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안전운항을 위한 공역 및 항로 분석용역’ 준공 · 2024.10. :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참가
2025	· 2025.3. : 김포시 UAM 유관분야 네트워킹 기업 모집 및 협업 - 관내 4개 업체 구성(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 분야별) · 2025.6. : 국토교통부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참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동참여안 - 경기도 거점으로 김포시 참여 · 2025.10. : Seoul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 김포시·KTL 홍보부스 공동운영(지자체-기관-기업 산업협력 모델 제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0,000	142,461	77,500	39	
2024	97,500	71,339		26,161	77,500천원 이월포함
2025	140,000	58,859		81,1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장 김주혁	담당자	행정6급 황수정	전화	5122
-----	-------	------------	-----	----------	----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사업기간	2025. 1. 1. ~ 12. 31.	사업위치	미래전략과
사업규모	미래전략과 14명 국내여비		
사업목적	미래전략과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관내·외 출장비 지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대통령령 제35811호	
	위임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해당조례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5,000	5,000	0	0	5,000	5,000	1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	5,000			5,000	5,000	1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국내여비	202-01 국내여비	· 2025년 10월~12월(3개월) 미래전략과 관내·외 출장비 경정(15,000,000원)-기정(10,00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미래전략과 국내여비 총예산 10,000천원에서 97.7%인 9,769천원 지출 완료(2025. 10. 31. 기준)
→ 미래전략과 국내여비 예산 고갈로 '25년 10월부터 국내여비 지출 불가
-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도심항공교통(UAM)포럼 업무, 수상교통체계 구축관련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야간정책 발굴, AI·데이터 협의회 참석 등] 특성상 관외 출장이 잦은 편으로 '25년 10월~12월 출장비 지급을 위해 추가 여비가 필요한 상황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10월 1일기준 미래전략과 직원 당초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국내여비 지출 증가
- 미래전략과 향후('25. 11.~12.) 출장 계획 조사 결과 추가 예산 필요성 증대

※ 미래전략과 향후('25. 11.~12.) 출장 계획

팀명	일자	출장장소 및 내용	비고
미래정책팀	'25. 11.~12.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인천해수청, 한강유역청 등 협의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관련 회의 참석	
	'25. 12.	수원시(경기도청) / 인구특특위원회·인구정책위원회 참석	
	'25. 11. 18.	마곡 코엑스(UAM 포럼) 미래전략과장 외 5인	
	'25. 11. 20.	2025 K-UAM Confex 미래전략과장 외 2인	
신야간정책팀	'25. 11. ~ 12.	관내 / 야간랜드마크 조성 관련 및 야간 웰니스프로그램 현장 확인 (2주 1회 / 총 4회)80,000	
	'25. 11. ~ 12.	관외 / 야간랜드마크 조성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 (2주 1회 / 총 4회)300,000	
데이터기반팀	'25. 11. 4.	수원시 / 경기 AI플랫폼 개통식 참석(3인)	
	'25. 11.	서울시 / AI-데이터 협의체 참석(3인)200,000	
	'25. 12.	수원시 / 경기도 AI-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참석(2인)100,00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미래전략과 국내 여비 지급('25. 10. ~ 12. 3개월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미래전략과 국내여비 9,769천원 지출 완료[총예산:10,000천원(3회추경 5,000천원) / 집행률 97.7%]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000	9,769	-	23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미래전략과	미래정책팀장 김주혁	담당자	행정8급 배소희	전화	5124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미래도시건설과



(미래도시건설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미래도시건설과
기 정 액	5,948천원	요 구 액	4,041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8,650		4,609	4,041	4,041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금 ◎고재처리(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공사)		4,000			4,000	4,000	공사중 발생한 고재처리 수입
기타수입/그외수입 ◎출장여비 중복 지급분 반납		41			41	41	2024년 출장여비 중복 지급분 반납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도시디자인과
기 정 액	637,110천원	요 구 액	-3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50	20	50	0	-30	-30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0	20	50	0	-30	-30	

(도시디자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 서 명	도시디자인과
기 정 액	4,545,000천원	요 구 액	9,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20,000	0	11,000	9,000	20,000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0	20,000	0	11,000	9,000	20,000	

(도시디자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도시재생특별회계	부 서 명	도시디자인과
기 정 액	1,813,032천원	요 구 액	12,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0	12,000	0	0	12,000	12,000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도시재생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0	12,000	0	0	12,000	12,000	

도시경관 관리

사업기간	2025. 4. ~ 5.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도시디자인에 관심있는 공무원		
사업목적	도시경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 실시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00	0	2,400	0	0	0	-2,400	-2,4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0	0	2,400				-2,400	-2,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도시경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경정) 0원 - (기정) 2,400천원 =	-2,400	

□ 예산요구 사유

○ 도시디자인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디자인 행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우리시 부담금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우수 도시디자인 사례 견학, 벤치마킹 등 현장 중심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내부 교육
미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 11. : 제4회 추경 전액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일시 : 2023. 6. 26.(월) 16:00 ~ 18:00 · 장소 : 본관 3층 참여실 · 교육실시 결과 : 85명 참석
2024	· 일시 : 2024. 6. 25.(월) 15:00 ~ 17:0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교육실시 결과 : 67명 참석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	1,270	-	1,130	
2024	2,400	2,278	-	122	
2025	2,400	-	-	2,4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장 장민수	담당자	시설7급 정은혜	전화	5203
-----	--------	-------------	-----	----------	----	------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3.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읍면동 일원
사업규모	김포시(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9조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 제1항	
		제10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제1항 ⇨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60,000	460,000	0	0	0	0	188,983	
국비		0							
도비		0							
시비		460,000	460,000					188,983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88,983	
김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본예산) - 선금금지급 =	188,983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용역준공일 미도래(2026.10.)로 26년 ‘2035년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정비)’ 추진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원안가결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2024.11.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20235년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25. 8. : 2029년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 2025. 9. : 김포시의회 의견청취
 - 2025.11. :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5.11. : 2029년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공고 및 열람(30일)
 - 2025.12. :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 2026. 1. : 2035년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추진
 - 2026.10. : 2035년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공고(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2029년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사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60,000	271,017	-	188,98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디자인과	사업규모	김포시(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이월 요구액 (천원)	188,983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위치	김포시 읍면동 일원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장 이진나	담당자	시설7급 강윤주	전화	5207
-----	--------	------------	-----	----------	----	------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감정동 475-4번지 일원
사업규모	북변4사거리~김포간선14호 교량까지 농수로 인근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길이 670m, 폭 5m)		
사업목적	시책으로 조성된 농수로 산책로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휴식 및 편의시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관법	제4조 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관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5,000	405,000	5,000	0	0	400,000	0	400,002	
국비		0							
도비		0							
시비	5,000	405,000	5,000			400,000		400,002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2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401-01 시설비	· 공사비(토공, 제방/구조물 보강 등)	= 400,002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3회 추경(9월)에 예산확정 후, 10월 추진계획 결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11월 계약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됨
- 2차 보수공사는 금년 11월 계약 및 착공예정이며, 총 120일 공사기간으로 11월말 착공, 2026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비를 이월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 1차 보수공사 추진계획
- 2025. 4. : 1차 보수공사 착공 및 준공
- 2025. 9. :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 2025. 10. :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5. 11. : 공사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25. 11. : 2차 보수공사 계약 및 착공
- 2026. 4. : 2차 보수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타일보수, 방호벽면 보수, 산책로 보수, LED램프 교체 등
2024	- 운동기구 수리 등
2025	- 옹벽 타일 및 벙커 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000	9,493	-	10,507	
2024	5,000	4,528	-	472	
2025	405,000	4,998	-	400,002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디자인과	사업규모	L=440m, B=1.5m	이월 요구액 (천원)	400,002
부기명 (세부사업)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사업위치	감정동 475-4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장 장민수	담당자	시설7급 문유진	전화	5204
-----	--------	-------------	-----	----------	----	------

김포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4. ~ 2026. 11.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사업규모		276.606km ²			
사업목적		법정 정비기간 도래로 재정비하여 도시디자인(경관,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관법		제15조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해당조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포시 경관조례		제4조 제1항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 제1항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김포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800,000	0	800,000	0	0	0	415,915	
국비		0							
도비		0							
시비		800,000		800,000				415,915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15,915	
김포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207-01 연구용역비	· 김포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 인건비 : 112,925,229 + 78,068,850 = 190,994,079원 - 직접경비 : 8,100,000 + 31,200,000 = 39,300,000원 - 제경비(인건비*110%) : 124,217,752 + 85,875,734 = 210,093,486원 - 기술료 및 창작료((인건비+제경비)*20%) : 47,428,596 + 32,788,917 = 80,217,513원 - 손해배상공제료 : 1,451,651원 - 부가가치세(10%) : 29,412,323 + 22,793,350 = 52,205,673원 - 야간경관 특정경관계획 : 226,474,885천원	= 415,915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1회 추경(3월)에 예산확정 후, 추진계획 결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총 용역 3건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체결 및 계약완료함('25년 9월~10월)
- 용역기간은 총12개월이며, 내년 9월~10월에 용역완료예정으로 지급완료된 선급금을 제외한 연구용역비를 이월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추진계획
 - 2025. 3. : 2025년 1회 추경예산 편성
 - 2025. 4. ~ 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5. 6. :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 공고
 - 2025. 7. ~ 8. : 용역 입찰 공고
 - 2025. 8. ~ 9.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5. 9. ~ 11. : 협상우선대상자 협상 및 용역 계약
 - 2025. 10. ~ 11. : 용역 착수
 - 2025. 11. : 용역 착수보고회
 - 2026. 3. ~ 4. : 용역 중간보고회
 - 2026. 6. ~ 7. :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상정, 주민공청회 개최 등
 - 2026. 10. ~ 11. : 용역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00,000	384,085	-	415,915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디자인과	사업규모	276.606km ²	이월 요구액 (천원)	415,915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종합 구상도					
	자연경관구역 해안·복합경관구역 시가지경관구역 산림녹지축 수변축 염하해협축 한강축 김포누리축 도로축 산림거점 (9) 수변거점 (7) 역사문화거점 (13) 전입거점 (6) 조망거점 (11) (종북설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장 장민수	담당자	시설7급 문유진	전화	5204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철도과



(철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철도과
기 정 액	10,982,431천원	요 구 액	-10,982,214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179	10,982,393		-10,982,214	179	
기타수입/그외수입 ◎철도차량 입찰담합 소송 예상 승소금		0	10,982,393		-10,982,393	0	소송(1심)판결 지연에 따른 삭감
기타수입/그외수입 ◎하이패스카드 잔액 환급금		179			179	179	하이패스카드 해지에 따른 잔액 세입처리

(철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부 서 명	철도과
기 정 액	51,554,651천원	요 구 액	6,270,21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260,573	978,412	1,114,062		-135,650	-282,161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통신설비 이용 대가	1,030,623	935,220	1,074,062		-138,842	-95,403	생산자 물가지수 반영에 따른 감액
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 ◎김포골드라인 역명부기 판매사업	229,950	43,192	40,000		3,192	-186,758	김포골드라인 역명부기 풍무역 개역에 따른 사용료 세입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29,824	992,235	88,000		904,235	962,411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3년도 김포골드라인 지하 역사공기질 개선사업 반납액	23,959	22,462			22,462	-1,497	지하역사 역사공기질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수입/그외수입 ◎23년도 연락운임정산 수입금	5,865	969,773	88,000		881,773	963,908	'23년도 연락운임 공동용역 결과에 따른 정산 수입금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15,973	14,975			14,975	-998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3년 김포골드라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반납액	15,973	14,975			14,975	-998	지하역사 역사공기질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내부거래	24,120,070	27,601,420	10,982,393	11,280,575	5,338,452	3,481,350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24,120,070	27,601,420	10,982,393	11,280,575	5,338,452	3,481,350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전입금 증가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4. 9. ~ 2029. 9.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한강차량기지, 정거장(10개소), 구간(23.67km)		
사업목적	철도전문 운영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법	제42조 제①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①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1,506,030	30,974,290	24,413,060	0	6,413,029	0	148,201	-531,740	
국비		0						0	
도비	2,032,800	3,006,667	2,858,466				148,201	973,867	
시비	29,473,230	27,967,623	21,554,594		6,413,029			-1,505,60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8,201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 2025년도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 (도비) : 경정 3,006,667 - 기정 2,858,466	= 148,201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철도전문 운영기관에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24년도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추가 도비 지원금 교부('25.10.16.)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동의		
일자	2024.11. 반영								2016.2. 2023.10.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9. 9월 : 김포도시철도 건설·운영 사업면허 교부(국토부 면허조건 : 위탁)
 - 2016. 2월 : 김포도시철도 관리·운영 민간위탁(시의회 원안동의)
 - 2016. 6월 :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교통공사)
 - 2019. 9월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기존운영자 개통 후 5년간 / ‘24.9월까지)
 - 2023. 10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시의회 원안동의)
 - 2024. 1월 : 민간위탁 차기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로템 주식회사)
 - 2024. 4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차기운영 협약체결
 - 2024. 9월 ~ 2029. 09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차기운영자 5년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3.01. ~ 2023.12.)
2024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4.01. ~ 2024.12.)
2025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2025.01. ~ 2025.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879,000	27,296,609	0	582,391	
2024	31,506,030	31,506,030	0	0	
2025	30,826,089	30,826,089	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권병근 철도운영팀장 하대용	담당자	행정9급 고현승 공업7급 이승학	전화	5525 5537
-----	-----	--------------------------	-----	----------------------	----	-----------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4. ~ 2026. / 3년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제작(5편성) 및 시스템 확장(유치선등)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차량 혼잡률 과다 및 장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전동차 추가 제작으로 배차간격 단축 및 혼잡을 완화 등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3.2.5.3.
		3.2.5.3. 운영계획 1) 차량계획 나) 수송계획은 장래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해야 하며, 또한 승객의 편의성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때, 차량규모와 열차편성은 수송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2) 열차운영계획 다) 연도별 소요차량 수는 첨두시 최대혼잡구간 수요와 표정속도, 노선연장에 따른 왕복운전시간, 회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300,000	15,300,000	9,945,000	0	0	0	5,355,000	0	
국비	4,590,000	4,590,000	4,590,000					0	
도비		0						0	
시비	10,710,000	10,710,000	5,355,000				5,355,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355,000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401-01 시설비	·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증차 사업(5편성)	= 3,955,000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유치선 증설	= 1,400,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한 추가전동차 제작(5편성) 및 시설확장(유치선등)
-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사업으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추진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 국고보조사업(국비30%)으로 사업비 매칭하여 예산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매칭 편성 / 25년도 사업비 153억(국45.9억 지방비107.1억) 확보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협의면제)					적정				
일자	2024.11. 반영	2024.10.					2024.9.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024.05. : 국고보조금 교부(24-1차) / 1,566백만원
- 2024.06. : 성립전예산 편성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2차)
- 2024.07. : 원가용역(전동차) 및 설계용역 추진
- 2024.08. : 국고보조금 교부(24-2차) / 1,434백만원
- 2024.10. : 투자심사 협의면제 결정 / 행정안전부
- 2024.11. : 증차사업 변경계약 추진(기존사업 연계추진/6편성→11편성)
- 2024.11. : 국고보조금 교부(24-3차) / 1,590백만원
- 2024.12. : 시설개선(유치선 확장)사업 추진(운영사)
- 2025.03. : 국고보조금 교부(25-1차) / 3,000백만원
- 2025.03. : 유치선증설 사업비 교부(25-1차) / 3,000백만원(이월예산)
- 2025.07. : 유치선증설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2026.12. : 전동차 반입 및 영업투입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51,000,000	15,300,000	15,300,000	9,945,000	0	0	0	5,355,000	20,400,000
공 정 별	설계비	100,000	100,000	0						
	차량 제작	36,534,695	11,034,695	11,300,000	9,945,000	-2,600,000			3,955,000	14,200,000
	시설개선	13,465,305	4,165,305	4,000,000		2,600,000			1,400,000	5,300,000
	제작감독	130,000		0						130,000
	시운전	620,000		0						620,000
	조달수수료	150,000		0						15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전동차 증차사업 수정계약 체결 · 전동차증차 대일정계획수립 및 장납기자재 발주 · 시설확장(유치선, 시스템) 위탁 / 김포골드라인SRS(주)
2025	· 시설확장(유치선, 시스템) 위탁 사업비교부(25-1차)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5,300,000	11,134,695	4,165,305	-	
2025	14,110,305	3,000,000	-	11,110,3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기술팀장 김광성	담당자	공업7급 이기만	전화	5536
-----	-----	------------	-----	----------	----	------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수도권 연락운송 철도기관	
사업규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사업목적		도시철도법 제34조(연락운송)에 따른 운임수입 및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법		제34조(연락운송) 제1항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사업자”라 한다)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51,000	1,823,012	1,056,000	0	0	0	767,012	872,01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51,000	1,823,012	1,056,000				767,012	872,01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67,012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802-03 기타반환금등	·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반환금 (2023년도 발생분) (경정) 1,823,012천원 - (기정) 1,056,000천원	= 767,012	

□ 예산요구 사유

○ (연락운임정산)

- (목 적)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철도기관 연락운송 시 운임수입 선취 후 정산 및 배분
- (근 거) 「도시철도법 제34조」, 「2023년도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서」
- (절 차)
 - 운임수입 배분 협의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며, 협의 불성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동용역 결과 → 불성립 시 대광위 실무위원회 → 불성립 시 대광위 권역별위원회 → 국토부 결정
 - 협의 완료 시 30일 이내 운임수입을 정산하여야 하고 미정산 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예산증감 사유

○ 철도 이용수요, 이용 패턴, 정산방식 변화 등에 따른 매우 큰 변동 발생 → 정산금 변화
(단위 :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정산금 수입 (전년대비 변화율)	43,201,369	53,995,986 (24.99%)	147,173,773 (172.56%)	5,865,031 (-96.01%)
정산금 지출 (전년대비 변화율)	-210,838,365	-722,145,337 (-242.51%)	-821,505,283 (-13.76%)	-950,066,657 (-15.6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연락운임정산)
- 2022.4. ~ 2023.2. : ‘18~21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 2023.3. ~ 2023.10. : ‘18~21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결과 기관별 협의(조정절차 수행)
 - 2023.10. : ‘18~21년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 2023.12. ~ 2024.6. : ‘22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 2024.7. ~ 2024.10. : ‘22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결과 기관별 협의(조정절차 수행)
 - 2024.11. : ‘22년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 2024.12. ~ 2025.10. : ‘23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 2025.10. ~ 2025.11. : ‘23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결과 기관별 협의(조정절차 수행) (진행중)
 - 2025.12. : ‘23년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예상)
 - 2026.1. : ‘24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예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18~‘21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完 / ‘15년 ~ ‘21년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完
2024	‘22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完 / ‘22년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完
2025	‘23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금 협의 진행중 / ‘23년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22,250	1,721,263	-	987	예산변경 사용
2024	951,000	950,881	-	119	
2025	1,056,000	1,014	-	1,054,98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권병근	담당자	행정9급 고현승	전화	5525
-----	-----	------------	-----	----------	----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 명시이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2. 25. ~ 2026. 5. 25.	사업위치	경기도(김포시), 서울시, 인천시
사업규모	연구용역 1식(L=25.8km, 정거장10개소, 차량기지1개소)		
사업목적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김포시 대응 및 활용방안, 대응책 강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재정법	제38조 제①항
		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3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른 각 호와 같다. 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302,100	302,100	0	0	0	0	95,260	
국비		0							
도비		0							
시비		302,100	302,100					95,26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95,260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207-01 연구용역비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준공금 =	95,26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불가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원안가결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2024.11 반영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1. :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조정 노선(안) 발표(대광위)
- 2024. 08.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사업 반영(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고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2024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 2024. 09. :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KDI)
- 2025. 02.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착수
- 2025. 03.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25. 04. ~ 2025. 05.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관계기관(기재부, KDI) 면담
- 2025. 06. : 기재부 1차 점검회의 개최(기재부, KDI,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 인천시, 강서구)
- 2025. 06. ~ 2025. 11.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관련 관계기관 회의
(대광위,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 인천시, 강서구)
- 2026. 05. : 용역 준공(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 계획 수립 연구용역(380,850천원) ※ 준공금 152,340천원, 선금 228,510천원('21년도 기지출)
2024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 본사업 반영('24.8.)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4.8)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9.)
2025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2,100천원)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착수(계약금: 292,491천원, 선금: 204,74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02,100	206,840	-	95,2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사업팀장 김성관	담당자	시설7급 유석진	전화	5532
-----	-----	------------	-----	----------	----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 명시이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4. 9. ~ 2029. 9.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노선 일원
사업규모	김포한강차량기지, 정거장(10개소), 구간(23.67km)		
사업목적	철도전문 운영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효율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도시철도법	제42조 제①항
	위임규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제①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31,506,030	30,974,290	24,413,060	0	6,413,029	0	148,201	148,201	
국비		0							
도비	2,032,800	3,006,667	2,858,466				148,201	148,201	
시비	29,473,230	27,967,623	21,554,594		6,413,029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48,201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 2025년도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 (도비) : 경정 3,006,667 - 기정 2,858,466	= 148,201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5년도 4/4분기 운영관리비 집행완료('25.9.22) 이후 경기도로부터 '24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 도비 추가 교부('25.10.16.) → 당해연도 집행 불가로 이월 후 위탁금 지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2016.2. 2023.10.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09. 9월 : 김포도시철도 건설·운영 사업면허 교부(국토부 면허조건 : 위탁)
- 2016. 2월 : 김포도시철도 관리·운영 민간위탁(시의회 원안동의)
- 2016. 6월 :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울교통공사)
- 2019. 9월 :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기존운영자 개통 후 5년간 / ‘24.9월까지)
- 2023. 10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시의회 원안동의)
- 2024. 1월 : 민간위탁 차기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로템 주식회사)
- 2024. 4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차기운영 협약체결
- 2024. 9월 ~ 2029. 09월 :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차기운영자 5년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3.01. ~ 2023.12.)
2024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2024.01. ~ 2024.12.)
2025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2025.01. ~ 2025.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7,879,000	27,296,609	0	582,391	
2024	31,506,030	31,506,030	0	0	
2025	30,826,089	30,826,089	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권병근 철도운영팀장 하대용	담당자	행정9급 고현승 공업7급 이승학	전화	5525 5537
-----	-----	--------------------------	-----	----------------------	----	--------------

철도차량 입찰담합 관련 소송비용

- 명시이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3. 5. ~	사업위치	김포골드라인
사업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업목적	공정거래위 '철도차량 입찰담합' 의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444.5억) 추진에 따른 비용 지급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①항(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57,000	257,000	0	0	0	0	257,000	
국비		0							
도비		0							
시비		257,000	257,000					257,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57,000	
철도차량 입찰담합 관련 소송비용	201-01 사무관리비	○ 철도차량 입찰담합 적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변호사 비용(착수, 승소 등) - 인지대, 송달료	= 110,000 = 147,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5년 상반기 1심판결 예상에 따라 소송비용 집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평가 지연 및 보완감정 추진에 따라 25년도 1심판결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추진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7. 13. :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김포도시철도 포함 11건) / 공정거래위원회
- 2022. 9. 7. : 철도차량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행위 업체 : 현대로템(주), (주)우진산전, (주)다원시스 / 총 564억 과징금 부과
- 2022. 9. ~ 12. :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대응 동향 파악
- 2023. 1. ~ 3. : 국가철도공단(KR) 계약처 손해배상 청구 방안 협의 및 자료준비
- 2023. 3. 29. : 소송주체, 손해액 산출, 소송비용 부담주체 관련 협의(시 ↔ KR)
※ (소송주체) KR, 김포시 보조참가 / (손해액) 444억 / (소송비용) KR 우선부담 추후 정산
- 2023. 5. 26. : 시조정위원회 중요 소송 결정
- 2023. 6. 14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KR → 법원)
- 2024. 4. 2 : 1차 변론(손해금액 감정신청)
- 2024. 5. 21 : 2차 변론(감정신청서 제출)
- 2024. 7. 16 : 3차 변론(감정인지정)
- 2025. 5. 4 : 감정결과 보고서 제출(감정인 → 법원)
- 2025. 5. 9 : 사실조회 촉탁신청(피고1)
- 2025. 5. 28 : 사실조회 촉탁신청(피고2)
- 2025. 6. 3 : 사실조회 회신(감정인)
- 2025. 7. 1 : 사실조회 회신(감정인)
- 2025. 9. 17 : 보완감정신청(피고1)
- 2025. 11. 6 : 보완감정신청(피고2)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소송제기('23.6.14)
2024	· 변론(3회)진행 · 감정인 지정 및 감정평가 진행
2025	· 감정결과 사실조회 및 보완감정 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20,000	295,673	24,327	-	
2024	24,327	20,000	-	4,326	
2025	257,000	-	-	257,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기술팀장 김광성	담당자	통신7급 이은수	전화	5513
-----	-----	------------	-----	----------	----	------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 명시이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수도권 연락운송 철도기관
사업규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사업목적		도시철도법 제34조(연락운송)에 따른 운임수입 및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철도법		제34조(연락운송) 제1항
		①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사업자”라 한다)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951,000	1,823,012	1,056,000	0	0	0	767,012	1,821,812	
국비		0							
도비		0							
시비	951,000	1,823,012	1,056,000				767,012	1,821,812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821,812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송 정산	802-03 기타반환금등	·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반환금 (2023년도 발생분)	= 1,821,812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연락운임정산금 확정 절차 : 공동용역 결과 → 불성립 시 대광위 실무위원회 → 불성립 시 대광위 권역별위원회 → 국토부 결정
- 수도권 철도기관(13개社)의 이해득실이 상이하여 정산금 확정에 난항 발생
- 10.31.기준 현재 대광위 실무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11월28일까지 기관별 의견 수령중
- 불성립 시 대광위 권역별위원회 조정과 국토부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소요 시일에 따른 연내 지출 불확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연락운임정산)

- 2022.4. ~ 2023.2. : ‘18~21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 2023.3. ~ 2023.10. : ‘18~21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결과 기관별 협의(조정절차 수행)
- 2023.10. : ‘18~21년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 2023.12. ~ 2024.6. : ‘22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 2024.7. ~ 2024.10. : ‘22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결과 기관별 협의(조정절차 수행)
- 2024.11. : ‘22년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 2024.12. ~ 2025.10. : ‘23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 2025.10. ~ 2025.11. : ‘23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결과 기관별 협의(조정절차 수행) (진행중)
- 2025.12. : ‘23년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예상)
- 2026.1. : ‘24년 연락운임정산 공동용역 (예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18~‘21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完 / ‘15년 ~ ‘21년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完
2024	‘22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금 확정 및 지급 完 / ‘22년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完
2025	‘23년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금 협의 진행중 / ‘23년 연락반환승차권 정산 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22,250	1,721,263	-	987	예산변경 사용
2024	951,000	950,881	-	119	
2025	1,056,000	1,014	-	1,054,98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권병근	담당자	행정9급 고현승	전화	5525
-----	-----	------------	-----	----------	----	------

환경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환경정책과
기 정 액	6,173,974천원	요 구 액	-52,373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4,520	3,525	4,500	0	-975	-995	
수주료수입/증지수입 ◎배출시설인허가 증지수입	4,500	3,500	4,500	0	-1,000	-1,000	증지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20	25	0	0	25	5	2025년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5	844	0	0	844	819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2~23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정산 환수금	0	839	0	0	839	839	'22~'23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정산 환수금(시비)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25	5	0	0	5	-20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4,758	0	0	4,758	4,758	
보조금등 반환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22~23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정산 환수금	0	3,919	0	0	3,919	3,919	'22~'23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정산 환수금(국비)
보조금등 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2~23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정산 환수금	0	839	0	0	839	839	'22~'23년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정산 환수금(도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기후에너지과
기 정 액	16,960,686천원	요 구 액	1,176,61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45,012	47,842	45,012	42	2,788	2,830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결포 천연가스 충전소 임대료	39,344	41,232	39,344	0	1,888	1,888	'25년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른 임대료 증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결포 수소충전소 임대료	5,668	5,952	5,668	0	284	284	'25년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른 임대료 증가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 사업(23,24년) 이자(시비)	0	63	0	42	21	63	'23년, '24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시비) 이자	0	595	0	0	595	595	'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임시적세외수입	0	165,187	0	0	165,187	165,187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시비)	0	137,497	0	0	137,497	137,497	'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환수	0	4,456	0	0	4,456	4,456	폐차·수입말소 등으로 인한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으로 보조금 환수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2024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시비)	0	838	0	0	838	838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세입조치
기타수입/그외수입 ◎2024년 하반기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0	20,591	0	0	20,591	20,591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세입조치
기타수입/그외수입 ◎2024년 폐엔진 매각대금 및 이자	0	1,805	0	0	1,805	1,805	폐엔진 매각대금 및 이자 세입조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6,200	154,200	179,000	0	-24,800	-32,000	
과징금/과징금 ◎석유관련법 위반 과징금	23,000	15,000	22,500	0	-7,500	-8,000	석유관련법 위반 압제 감소에 따른 감액
과징금/과징금 ◎가스관련법 위반 과징금	0	3,600	1,000	0	2,600	3,600	가스관련법 위반 과징금 편성
과징금/과징금 ◎전기관련법 위반 과징금	6,000	4,000	9,000	0	-5,000	-2,000	전기공사법 위반 압제 감소에 따른 감액
과태료/차량관련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	15,000	12,000	16,000	0	-4,000	-3,000	과태료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감액
과태료/기타과태료 ◎석유관련법 위반 과태료	400	0	1,000	0	-1,000	-400	과태료 부과 대상없음으로 감액
과태료/기타과태료 ◎가스관련법 위반 과태료	3,600	1,000	4,500	0	-3,500	-2,600	가스관련법 위반 압제 감소에 따른 감액
과태료/기타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00,000	110,000	100,000	0	10,000	10,000	환경관련법(공사장)위반 압제 증가에 따른 증액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과태료/기타과태료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0	6,400	5,000	0	1,400	1,400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업체 증가에 따른 증액
과태료/기타과태료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1,200	200	0	0	200	-1,000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기타과태료 ◎미세먼지법위반 과태료	32,000	2,000	20,000	0	-18,000	-30,000	단속대상(노후경유차) 감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감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156,287	0	0	156,435	156,435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자(국비)	0	20	0	0	20	20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국비)	0	987	0	0	987	987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조치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환수	0	17,187	0	0	17,187	17,187	폐차·수입말소 등으로 인한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으로 보조금 환수
보조금등반환금/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도비)	0	138,093	0	0	138,093	138,093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
보조금등반환금/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도비)	0	148	0	0	148	148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조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전기승용 1,860대(민간 1,859대, 관용 1대), 전기화물 406대(민간 404대, 관용 2대), 전기버스 20대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755,870	18,039,850	22,446,000	0	-4,550	-5,278,600	877,000	-8,716,020	
국비	16,635,870	11,015,450	13,690,000		-4,550	-3,337,000	667,000	-5,620,420	
도비	924,000	420,000	168,000			42,000	210,000	-504,000	
시비	9,196,000	6,604,400	8,588,000			-1,983,600		-2,591,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77,00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승용차 1,860대 경정 (3,000천원*1,860대 - 4,550천원*관용1대) -기정 (3,000천원*1,731대 - 4,550천원*관용1대) * 국비 : 387,000천원	= 387,000	
		· 전기화물차 406대 경정(15,000천원*406대 - 10,000천원*관용2대) -기정 (15,000천원*448대 - 10,000천원*관용2대) * 국비 : △420,000천원, 시비 : △210,000천원	= -630,000	
		· 전기버스 20대 경정(112,000천원*20대) - 기정(112,000천원*10대) * 국비 : 700,000천원, 도비 : 210,000 시비 : 210,000천원	= 1,120,000	

□ 예산요구 사유

- 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 국고소진으로 시비 증액 없이 국고사업량만 증가 (전기승용 1,731대 → 1,860대)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8794(32025. 8. 25.)호 변경내시반영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사업량 증가(전기버스 10대 → 20대)
- 전기화물과 물량조정에 따라 전기화물 사업물량 축소(전기화물 448대 → 406대)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9782(2025. 9. 17.)호 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12.: 하반기 사업(변경)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기승용 875대, 전기화물 673대, 전기버스 20대 보급
2024	· 전기승용 1,140대, 전기화물 249대, 전기버스 60대 보급
2025	· 전기승용 1,214대, 전기화물 227대 보조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08,000	22,447,423	3,584,000	4,576,577	
2024	26,755,870	15,849,295	10,000	10,896,175	
2025	17,172,850	9,321,743	-	7,851,1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전기자동차(화물) 택배용 차량 25대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26,755,870	18,039,850	22,446,000	0	-4,550	-5,278,600	877,000	25,000	
국비	16,635,870	11,015,450	13,690,000		-4,550	-3,337,000	667,000	25,000	
도비	924,000	420,000	168,000			42,000	210,000		
시비	9,196,000	6,604,400	8,588,000			-1,983,6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화물차 택배용 차량 추가보조금 25대 - 1,000,000원*25대 =25,000,000원	= 25,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전기화물 확대 보급을 통해 우리 시 온실가스 저감 및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거나, 기존 경유화물차 없이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 지급
- 출고일 기준 6개월 미경과한 전기화물차에 대해 택배용 차량 추가지원금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12.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2026. 01. ~ 06. : 전기자동차(화물) 택배용차량 추가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기승용 875대, 전기화물 673대, 전기버스 20대 보급 완료
2024	· 전기승용 1,140대, 전기화물 249대, 전기버스 60대 보급 완료
2025	· 전기승용 1,214대, 전기화물 227대 보조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08,000	22,447,423	3,584,000	4,576,577	
2024	26,755,870	15,849,295	10,000	10,896,175	
2025	17,172,850	9,321,743	-	7,851,10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전기이륜차 배달목적 차량 20대		
사업목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60,000	131,200	131,200	0	0	0	0	2,200	
국비	80,000	65,600	65,600					2,200	
도비		0							
시비	80,000	65,600	65,6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200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이륜 배달목적 추가지원금 20대 - 110,000원*20대 = 2,200,000원	= 2,2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전기이륜 확대 보급을 통해 우리 시 온실가스 저감 및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 출고일 기준 6개월(3개월) 미경과한 전기이륜차에 대해 배달목적 추가지원금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12.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
 - 2026. 01. ~ 06. : 전기이륜차 배달목적 추가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전기이륜차 53대 보급 완료
2024	· 전기이륜차 37대 보급 완료
2025	· 전기이륜차 31대 보조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000	72,004	-	87,996	
2024	124,800	88,855	400	35,545	
2025	131,600	67,511	-	64,0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0. 14. ~ 2026. 10. 13.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자원화센터 외 9개소(공공시설 폐기물부문)		
사업목적	김포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제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효율적 관리 필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해당조례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70,000	70,000	30,000	0	40,000	0	0	35,077	
국비		0							
도비		0							
시비	70,000	70,000	30,000		40,000			35,077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35,07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207-01 연구용역비	·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용역=35,076,900원 =	35,077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제4차 계획기간(2026 ~ 203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계획기간 동안 이행연도의 우리시 공공시설(폐기물 분야)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계획서(10월 말) 및 명세서 제출(3월 말), 배출권거래 등의 의무 발생
- 금년 10월 계약한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용역'이 2026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원안가결								
일자	2024.11. 반영		2025.4.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집행 의뢰 (기후에너지과→자산관리과)
: 계약대상자 결정통보
 - 2025. 10. :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착수계 수령
: 2025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및 제출 (검증기관 검증 후)
 - 2026. 03. : 2025년 명세서 작성·제출
 - 2026. 06. ~ 07. : 배출권 구매
 - 2026. 07. : 2025년 배출권 제출(환경부)
 - 2026. 10. :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계약 연장(2022.10.06. ~ 2023.09.15.) -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023.10.05. ~ 2024.09.15.) -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선금지급(28,106,720원)
2024	-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024.10.10. ~ 2025.09.15.) -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 선금지급(24,593,380원)
2025	-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대응 용역(2025.10.14. ~ 2026.10.1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6,000	94,026	7,027	4,947	
2024	77,027	61,540	10,541	1,946	
2025	80,541	25,500	-	55,0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환경8급 이미현	전화	5363
-----	--------	------------	-----	----------	----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6. ~ 2026. 3.	사업위치	후평리, 석정1리, 포내리
사업규모	3개 마을(76가구, 마을회관 3개소), 330kW		
사업목적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및 에너지복지 실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8조 제3항
		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29,380	0	0	429,380	0	0	429,380	
국비		0							
도비		161,020			161,020			161,020	
시비		268,360			268,360			268,36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29,380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후평리		
		- 자가용 : [(1,644,000원*3kW*33가구) + (1,463,000원*17.5kW*2가구)] * 80%	= 236,928	
		- 상업용 : 1,644,000원*50kW*1개소*80%		
		· 석정1리		
		- 자가용 : 1,644,000원*3kW*24가구*80%	= 107,842	
		- 상업용 : 1,644,000원*10kW*1개소*80%		
		· 포내리		
		- 자가용 : 1,644,000원*3kW*17가구*80%	= 84,610	
		- 상업용 : 1,644,000원*13.335kW*1개소*80%		

* 지원단가 : (태양광) 1,644천원/kW, (지열) 1,463천원/kW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마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사업계획변경 → 道 승인 절차 후 추진 가능)
- 태양광 설비 급증으로 인한 한전 계통 연계 지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컨소시엄 협약 체결(시-마을-시공사)
 - 2025. 08. ~ 10. : 사업계획 변경(석정1리, 포내리)
 - 2025. 10. ~ 2026. 01. : 자가용 설치 공사 착공 및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상업용)
 - 2026. 02.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미추진
2024	미추진
2025	· 사업대상 : 하성면 후평리, 대곶면 석정1리, 월곶면 포내리 · 사 업 량 : 자가용 76가구(257kW), 상업용 3개소(73kW) - 총 330kW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29,380	-	-	429,3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김연재	전화	5384
-----	--------	-------------	-----	----------	----	------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지원)

- 명시이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사업위치	대곶면 울생리 422-3외 1필지	
사업규모		대곶면 작은목욕탕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사업목적		김포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및 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3,900,000	89,420	0	89,420	0	0	0	89,420	
국비	3,900,000	89,420		89,420				89,420	
도비		0							
시비		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89,420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대곶면 작은목욕탕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 89,42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대곶면 작은목욕탕 BF인증 절차 등에 따른 건립 사업 기간 지연(당초 2025. 5월 → 12월 준공예정)으로 인테리어 및 물품구입 시기 지연(2025. 12월 공사 준공 이후 2026년도 내 집행 예정)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는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이월 가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 사업비 교부(전력기반기금 → 시)
 - 2025. 06. : 사업비 재배정(기후에너지과 → 대곶면)
 - 2025. 06. ~ 2026. 12.: 사업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양촌읍, 대곶면 마을 공동 물품 구입 및 마을회관 보수 공사 등
2024	· 양촌읍 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복합시설 조성(564,930천원) · 대곶면 작은목욕탕 건립(564,930천원)
2025	· 대곶면 작은목욕탕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900,000	2,605,998	1,294,000	2	
2024	2,423,860	1,293,922	1,126,944	2,994	
2025	1,216,364	362,037	-	854,32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김연재	전화	5384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환경지도과
기 정 액	135,000천원	요 구 액	6,62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8,000	2,706	5,000	0	-2,294	-15,294	
징수교부금수입/징수교부금수입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8,000	2,700	5,000	0	-2,300	-15,300	징수교부금 수입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5년 상반기 이자수입	0	6	0	0	6	6	2025년 상반기 이자수입액
임시적세외수입	120	8,921	0	0	8,921	8,801	
기타수입/그외수입 ◎출장여비 환수금	20	110	0	0	110	90	출장여비 환수금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액	100	90	0	0	90	-10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환급액
기타수입/그외수입 ◎하이패스카드 환급액	0	490	0	0	490	490	하이패스카드 환불에 따른 환급액
기타수입/그외수입 ◎소송비용회수금	0	8,231	0	0	8,231	8,231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회수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자원순환과
기 정 액	18,053,385천원	요 구 액	732,936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0	666,786	0	0	666,786	666,786	
기타수입/그외수입 ◎소송비용 청구료(인천지법 2022아5211)	0	20,045	0	0	20,045	20,045	소송비용 청구료
기타수입/그외수입 ◎행정대집행비용 회수 (하성면 마곡리 479-15 외 8필지)	0	613,759	0	0	613,759	613,759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기타수입/그외수입 ◎재활용품(파병)업체 매매계약 해지 보증보험금	0	32,982	0	0	32,982	32,982	재활용수집소 재활용품(파병) 계약업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보험금, 물품대금 보증보험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97,988	466,150	400,000	0	66,150	-131,838	
과징금 ◎폐기물관련법 위반 과징금	397,988	222,260	200,000	0	22,260	-175,728	폐기물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태료 ◎폐기물관련법 위반 과태료	200,000	243,890	200,000	0	43,890	43,890	폐기물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활용수집소 운영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8. ~ 2026. 3.	사업위치	금포로 1119 (김포시 재활용수집소)
사업규모	7,106톤 (19.46톤/일, 2024년 기준)		
사업목적	김포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수집소의 안정적인 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5호
	해당조례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2,300,529	2,628,185	2,456,316	0	171,869	0	0	157,942	
국비		0							
도비		0							
시비	2,300,529	2,628,185	2,456,316		171,869			157,942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57,942	
재활용수집소 운영	401-01 시설비	· 재활용수집소 소방시설 설치	= 157,942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재활용 선별시설의 지속적인 화재 발생 등 화재에 취약한 재활용시설의 특성상 소방설비를 강화하여 김포시의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와 화재예방을 하기 위함
- 재활용수집소 소방시설 설치 공사 사업 지연으로 2026년 3월 준공 예정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8. ~ 09.: 실시설계용역
 - 2025. 10. ~ 11.: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5. 12.: 공사 착공
 - 2026. 03.: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재활용수집소 파봉공간 확보 공사 - 공사기간 : 2023. 3. 21. ~ 5. 19.(60일) - 공사금액 : 314,933,200원 - 공사내역 : 파봉공간 확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전기공사 등 . 가설건축물 30x20m, 바닥공사 및 옹벽(구간:50m) 설치
2024	○ 재활용수집소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공사 - 공사기간 : 2024. 6. 21. ~ 9. 10.(82일) - 공사금액 : 377,430,000원 - 공사내역 : 강파이프조(가설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450㎡) 설치, 파봉공간 지붕 개선(360㎡) 등
2025	○ 재활용수집소 소방시설 설치 공사 - 2025. 8. ~ 9.: 실시설계용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64,338	1,966,016	-	98,322	
2024	2,300,529	2,192,179	-	108,350	
2025	2,628,185	2,470,243	-	157,942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자원순환과	사업규모	선별동 투입구 및 야적장 소방시설 설치	이월 요구액 (천원)	157,942
부기명 (세부사업)	재활용수집소 운영	사업위치	금포로 1119		
현장사진					
	선별동 투입구				
현장사진					
	폐기물 및 재활용 야적장		폐비닐 및 파지 야적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7급 황윤희	전화	2776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해양하천과



(해양하천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해양하천과
기 정 액	4,695,641천원	요 구 액	116,634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0,823	21,491	6,500	0	14,991	668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6,000	10,970	0	0	10,970	4,970	공유재산 임대료 편성
사용료수입/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	5,562	3,609	3,500	0	109	-1,953	
징수교부금수입/징수교부금수입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9,231	6,889	3,000	0	3,889	-2,342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및 전기요금 결제 계좌 이자수입	30	23	0	0	23	-7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1	13,508	0	0	13,508	13,487	
기타수입/그외수입 ◎그외수입	21	13,508	0	0	13,508	13,487	유류카드 포인트 환급,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6,676	0	0	6,676	6,676	
과징금/과징금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징금	0	900	0	0	900	900	
변상금/변상금 ◎공유재산 변상금	0	5,776	0	0	5,776	5,776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179	0	0	179	179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4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0	179	0	0	179	179	

하천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하천
사업규모	하천 관리물품 구입 및 전기요금 납부 등		
사업목적	하천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납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7조 제7항
		소하천정비법	제26조 제3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7항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항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64,224	1,064,224	0	0	0	0	1,064,22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64,224	1,064,224				0	1,064,22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하천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201-02 공공운영비	· 하천자동차단시설 운영비(전기 및 회선) : 경정(90,914원*62개소*12월)-기정(87,000원*60개소*12월)	5,000	
	401-01 시설비	·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 : 경정(1,000,000원/m*235m)-기정(1,000,000원/m*240m)	-5,000	

□ 예산요구 사유

- 하천자동차단시설 개소 증가(60개소->62개소) 및 월 평균요금 증가(87,000원->90,914원)
-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 물량 감소(240m->235m)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서암천(도사리) 배수관로 정비공사 집행
- 2025. 01. : 서암천(도사리) 배수관로 정비공사 준공
- 2025. 02.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상반기) 집행
- 2025. 03. : 수초목 제거공사 집행
- 2025. 07.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하반기) 집행
- 2022. 09.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상반기) 준공
- 2023. 10. : 계양천(운양동) 제방도로 안전난간 설치
- 2025. 10. : 포내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수초목 제거공사(연간단가)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 · 준설공사(가마지천,고창천) · 거물대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2024	· 수초목 제거공사(연간단가)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 · 신곡천 호안보수공사 · 포내천 제방도로 보수공사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2025	· 수초목 제거공사(연간단가) · 하천유지관리(연간단가) · 봉성포천 교량 보수공사 · 하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16,445	1,494,995	12,932	8,518	
2024	1,060,636	951,531	76,784	32,321	
2025	1,141,008	712,192	-	428,81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공업9급 김태호	전화	5429
-----	-------	------------	-----	----------	----	------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포상금

사업기간		2025. 12. ~ 2026. 4.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업무 연찬회, 벤치마킹 추진		
사업목적		부서 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20,000	0	0	0	0	20,000	20,000	
국비		0						0	
도비		20,000					20,000	2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포상	201-01 사무관리비	· 업무 연찬회 및 역량강화 벤치마킹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부서 내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경기도 신규정책 오디션 수상에 따른 포상금(20,000천원) 반영(「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포상 계획」)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 수상
- 2025. 12. :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포상 계획」 결과통보
- 2026. 01. : 업무 연찬회 계획 수립
- 2026. 02. : 업무 연찬회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7어가		
사업목적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650	38,850	0	0	0	1,250	37,600	3,200	
국비	28,520	31,080				1,000	30,080	2,560	
도비		0						0	
시비	7,130	7,770				250	7,520	6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6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301-14 기타보상금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 800,000원*47어가	= 37,600	

□ 예산요구 사유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 10월 지급대상자 선정 후 직불금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경기도 해양수산과-20085(2025. 10. 20.)호]
- 2024년 대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자 증가(43어가→47어가)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2025. 07.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 08. ~ 2025. 11. :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 2025. 11. ~ 2025. 12.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5.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직불금 지급 57어가 / 45,875천원
2024	· 직불금 지급 43어가 / 34,400천원
2025	· 선정된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450	37,762	-	10,688	
2024	35,650	35,650	-	-	
2025	1,250	-	-	1,2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0어가			
사업목적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100	15,300	0	1,300	0	1,000	13,000	6,200	
국비	9,100	15,300		1,300		1,000	13,000	6,2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	
소규모어가 직불제	301-14 기타보상금	· 소규모어가 직불금 : 1,300,000원*10어가	= 13,000	

□ 예산요구 사유

-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 10월 지급대상자 선정 후 직불금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경기도 해양수산과-20085(2025. 10. 20.)호]
- 2024년 대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자 증가(7어가→10어가)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2025. 07. :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 08. ~ 2025. 11. :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 2025. 11. ~ 2025. 12.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5.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직불금 지급 4어가 / 4,984천원
2024	· 직불금 지급 5어가 / 6,500천원
2025	· 선정된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800	4,984	-	6,816	
2024	9,100	6,500	-	2,600	
2025	2,300	-	-	2,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어선원 직불제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4어가		
사업목적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소득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4,400	19,200	0	0	0	1,000	18,200	-5,200	
국비	24,400	19,200				1,000	18,200	-5,2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200	
어선원 직불제	301-14 기타보상금	· 어선원 직불금 : 1,300,000원*14어가	= 18,200	

□ 예산요구 사유

- 연근해어업 어선원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수산업 공익기능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 10월 지급대상자 선정 후 직불금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편성
[경기도 해양수산과-20085(2025. 10. 20.)호]
- 2024년 대비 어선원 직불제 신청자 감소(18어가→14어가)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2025. 07. : 어선원 수산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 08. ~ 2025. 11. :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 2025. 11. ~ 2025. 12.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5. 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직불금 지급 23어가 / 28,151천원
2024	· 직불금 지급 18어가 / 24,400천원
2025	· 선정된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400	28,151	-	5,249	
2024	24,400	24,400	-	-	
2025	1,000	-	-	1,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다목적 행정선 건조

사업기간	2025. 12. ~ 2028.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행정선 1척(30톤급) 건조		
사업목적	바다, 하천 수상재난 대응 및 불법어업 단속 등 추진을 위한 행정선 도입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업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10,000	0	0	0	0	10,00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10,000	1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다목적 행정선 건조	401-01 시설비	· 기초 조사 용역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명항 국가어항 지정, 수상 재난 대응, 하천점검 시민 안전순찰 불법어업 지도단속, 무인도서 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선이 없어 현장 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가 큼
- 이에 따라, 수상행정 효율화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행정선 부재로 해역관리, 불법어업 단속, 수상재난 대응 등 불가로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26년 예정	-	-	-	'26년 예정	'26년 예정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2. : 기초조사 용역 추진
- 2026. 01. ~ 2026. 02. : 사전절차 이행
- 2026. 03. ~ 2026. 12.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7. 01. ~ 2028. 12. : 선박 건조
- 2029. 01. : 행정선 운항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 복구공사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0. ~ 2026. 4.	사업위치	하성면 봉성리 640-18번지 일원
사업규모	하천 사면 보강 L=100m		
사업목적	국가하천 무제부 구간 사면 유실 및 침하를 복구하여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92조 제6의2항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당조례	하천법	제27조 제6항(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70,827	0	0	0	170,827	0	170,827	
국비		170,827				170,827		170,827	
도비		0							
시비		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70,827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 복구사업	401-01 시설비	· 무제부 사면 복구공사 1,000천원/m ² x 170m ²	= 170,827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5.8.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사면 복구공사비 배정('25.제3회 추경예산 편성 완료)
-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으나, 복구공사 완료를 위한 실 집행 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이월 필요
※ 2025년 국가하천 한강 전류리 구간 사면복구 사업비 배정[한강유역환경청-1731(2025.8.2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12. : 실시설계 용역 및 군협의 추진
 - 2026. 01. ~ 2026. 04. : 공사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500,000	0	170,827	0	0	0	170,827	0	329,173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0		0						
	공사비	480,000		150,827				150,827		329,173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2024	·
2025	·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량: 사천사면 복구 L=65m, H=3~4m - 사업비: 19,68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70,827	-	-	170,82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사면 보강 L=100m	이월 요구액 (천원)	170,827
부기명 (세부사업)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 복구공사	사업위치	하성면 봉성리 640-18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6급 진미란	전화	5428
-----	-------	------------	-----	----------	----	------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포상금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2. ~ 2026. 4.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업무 연찬회, 벤치마킹 추진		
사업목적	부서 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0,000	0	0	0	0	20,000	20,000	
국비		0							
도비		20,000					20,000	20,000	
시비		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포상	201-01 사무관리비	· 업무 연찬회 및 역량강화 벤치마킹	= 2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업무 연찬 일정 조율 및 타 기관 간 협의를 위한 기간 부족으로 금년 내 사업비 집행 불가
- 계획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예정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 수상
 - 2025. 12. : 「2025년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시·군 포상 계획」 결과통보
 - 2026. 01. : 업무 연찬회 계획 수립
 - 2026. 02. : 업무 연찬회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정책팀장 민경수	담당자	행정7급 이승철	전화	5422
-----	-------	------------	-----	----------	----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3. ~ 2026. 7.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항1로 107
사업규모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2층)		
사업목적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근로복지·교육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및 어업활동 적응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000,000	0	0	1,000,000	0	0	953,420	
국비		0							
도비		300,000			300,000			253,420	
시비		700,000			700,000			7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953,420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건립	401-01 시설비	· 쉼터 건립 공사비 : 941,660,000원*1개소	= 941,660	
	401-02 감리비	· 쉼터 건립 감리비 : 11,760,000원*1개소	= 11,76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부지 변경 및 설계 민원 반영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착공 시기가 `25.7.에서 `25.12.로 지연
- 착공 시기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명시이월 후 재추진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3.

- 2024. 07.

- 2025. 04. ~ 2026. 01.

- 2026. 02.

- 2026. 07.
- : 어업인 복지회산 건립 신청

: 외국인 어업종사자 비율 감안에 따라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사업 수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 인허가

: 공사착공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1,000,000	0	1,000,000	0	0	1,000,000	0	0	0	
공 정 별	설계비	46,580		46,580			46,580				
	보상비	0		0							
	공사비	941,660		941,660			941,660				
	감리비	11,760		11,760			11,76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실시 설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000,000	32,606	-	967,39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다목적 행정선 건조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2. ~ 2028.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행정선 1척(30톤급) 건조		
사업목적	바다, 하천 수상재난 대응 및 불법어업 단속 등 추진을 위한 행정선 도입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제1항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0,000	0	0	0	0	10,000	1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10,000					10,000	10,000	
기타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다목적 행정선 건조	401-01 시설비	· 기초 조사 용역	= 1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다목적 행정선 건조를 위한 기초 조사는 김포해역(수로) 조사, 선박 규모·재원 등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으로 '26년 상반기까지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2. : 기초조사 용역 추진
 - 2026. 01. ~ 2026. 02. : 사전절차 이행
 - 2026. 03. ~ 2026. 12.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7. 01. ~ 2028. 12. : 선박 건조
 - 2029. 01. : 행정선 운항개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풍무동 573-3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 L=105m(울타리 70경간)		
사업목적	김포시-인천광역시 서구 간 계양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하부 산책로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20,000	0	0	20,000	200,000	0	203,080	
국비		0							
도비		0							
시비		220,000			20,000	200,000		203,080	200,000 특교세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3,080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401-01 시설비	· 산책로 연결 보행데크(L=105m * W=2m) : 1,934,000원 * 105m =	203,08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사업 특성상 구조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사시기 일치 등 인천시 간 협의 및 연계 필요
- 금년 내 인천광역시와의 동시 착공이 불가하므로 사업비 이월 후 재추진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0. : 주민참여예산 채택
 - 2023. 07. :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주체 미확정, 계양천 수질개선시설 공사
 - 2023. 12. : 2023년 2회 추경 전액감액
 - 2025. 09. : 원당교 하부 산책로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6. 03. : 공사 착공
 - 2026. 06.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2025. 09. :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20,000	-	-	22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L=105m, B=2m)	이월 요구액 (천원)	203,080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 사업	사업위치	풍무동 573-3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녹지8급 이나경	전화	5415
-----	-------	------------	-----	----------	----	------

배수펌프장 정비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2. ~ 2026. 4.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386-37 등 15개소
사업규모		향산1배수펌프장 등 15개소 정밀안전점검		
사업목적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안정적인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 유지를 통해 침수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030,000	1,152,000	1,152,000	0	0	0	0	425,000	
국비		0							
도비		0							
시비	1,030,000	1,152,000	1,152,000					425,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25,000	
배수펌프장 정비	401-01 시설비	.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용역 : 425,000,000원*1식 =	425,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기간 미도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조달청 계약 의뢰
 - 2025. 11. ~ 2025. 12. : 업체 선정 및 용역 착수
 - 2026. 04. : 용역 준공 및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석탄배수펌프장 흡수정 준설 공사 · 운양1배수펌프장 외 10개소 제진기컨베이어 개선(기계설비) 공사 · 향산1배수펌프장 외 6개소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 수리 · 봉성2배수펌프장 관사동 지붕보수공사 · 향산2배수펌프장 토출밸브 교체공사 · 석탄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2024	· 봉성2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 제촌, 월드배수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도사간이펌프장 우수관로 침하부 보강공사 · 노을간이펌프장 기동반 증설 공사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공사 · 월드배수펌프장 외 7개소 준설공사 · 배수펌프장 토목 및 건축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025	· 운양배수펌프장 노후 계단 교체 · 봉성3배수펌프장 제진기 점검로 설치 · 향산1·3배수펌프장 제어설비 교체 · 석탄배수펌프장 외 3개소 준설 · 봉성2·3배수펌프장 유입부 준설 · 배수펌프장 예초 및 관목전정 · 향산2배수펌프장 진입도로 재포장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905,367	1,383,132	1,091,278	430,957	
2024	2,121,278	2,089,328	-	31,950	
2025	1,152,000	657,493	-	494,507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배수펌프장 15개소 정밀안전점검		이월 요구액 (천원)	425,000
부기명 (세부사업)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동 5-6 등 15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시설7급 지정은	전화	5442
-----	-------	------------	-----	----------	----	------

노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6. 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178번길 165
사업규모		봉성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1대 교체		
사업목적		노후 배수펌프 교체를 통해 재난발생 예방 등 침수 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800,000	300,000	0	0	0	300,000	0	3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8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노후 배수펌프장 정비	401-01 시설비	· 봉성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 300,000,000원*1대 =	3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도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으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이월 및 본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배수펌프 물품 구매
 - 2026. 06. : 시운전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향산2배수펌프장 배수펌프 2대 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00,000	-	800,000	-	
2025	1,100,000	800,000	-	3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배수펌프 1대 교체	이월 요구액 (천원)	3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노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178번길 165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전화	5443
-----	-------	------------	-----	----------	----	------

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 명시이월 (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9. ~ 2026. 6.	사업위치	하성면 석탄리 530-14번지 일원
사업규모	주차차단기, 캐노피, CCTV, 노면도색, 화장실 설치 등		
사업목적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환경 개선 및 유료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8조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13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50,000	0	0	200,000	250,000	0	430,389	
국비		0							
도비		0							
시비		450,000			200,000	250,000		430,389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30,389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하성 공영주차장 정비 - 주차관제기기, 캐노피, CCTV 설치, 노면도색 등 시설물 정비 - 화장실 설치 공사(수도, 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 200,000 = 230,389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하성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관 매설 필요
-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12월~3월)에 따라 공사 중지
-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후 공사 재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10. : 실시설계용역
 - 2025. 11. : 계약심사
 - 2025. 12. : 공사 계약 및 공사중지(동절기)
 - 2026. 3. ~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50,000	19,611	-	430,3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공업8급 이경수	전화	2872
-----	-------	------------	-----	----------	----	------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1. ~ 2026. 4.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교통신호기 설치 7개소		
사업목적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신호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600,000	300,000	0	300,000	0	0	347,533	
국비		0							
도비		0							
시비		600,000	300,000		300,000			347,533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347,533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 교통신호등 설치 7개소(북변삼거리 등 7개소) : 347,533천원 =	347,533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신호기(차량 및 보행) 설치를 위한 기초구조물 및 통신관로 등 지하 매설이 필요하나, 동절기 기온 하강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공사착공
 - 2025. 12. : 동절기 기온 강화로 인한 명시이월(공사중지)
 - 2026. 3. ~ 4. : 신호기 설치 공사 재착수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신호등 5개소 신규 설치 - 통진읍 마송리 618(마송5어린이공원 입구 삼거리) - 통진읍 마송리 592(마송대방엘리움 버스정류장) - 장기동 1327(장기지구대) - 구래동 6930(구래초등학교) - 고촌읍 신곡리 504-4(대보천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00,000	236,603	-	363,39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7급 이무영	전화	5923
-----	-------	------------	-----	----------	----	------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 명시이월 (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5. 5. ~ 2026. 10.	사업위치	김포시 및 주변 교통권역
사업규모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사업목적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 제1항
		①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제1항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00,000	0	0	400,000	0	0	4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400,000			400,000			4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 400,000,000원 =	4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어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25. 10. 19. : 사전규격공개
 - 2025. 10. 2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2025. 11. 1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2025. 1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후 가격 입찰
 - 2025. 12. :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2026. 10. :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0,000	-	-	4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7급 전보배	전화	2465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대중교통과
기 정 액	11,570,090천원	요 구 액	2,972,179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140,000	130,000	200,000	0	-70,000	-10,000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광고사용료	140,000	130,000	200,000	0	-70,000	-10,000	측면광고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0	1,903	0	0	1,903	1,903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4년도 수요응답형 버스 (DRT) 통합전산 및 CS센터 운영	0	1,903	0	0	1,903	1,903	2024년도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전산 및 CS센터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5,000	4,000	20,000	0	-16,000	-1,000	
과태료/기타과태료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0	4,000	20,000	0	-16,000	-1,000	당초 추계액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 감소

The 경기패스(국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수 40,291명		
사업목적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대한 환급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80,000	5,940,000	5,460,000	0	0	0	480,000	3,060,000	
국비	1,440,000	2,970,000	2,730,000				240,000	1,530,000	
도비	432,000	891,000	819,000				72,000	459,000	
시비	1,008,000	2,079,000	1,911,000				168,000	1,07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0	
The 경기패스 (국비)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경정) 5,940,000천원 - (기정) 5,460,000천원	= 48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예산 반영 필요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이용요금 환급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패스 이용자 지속 증가 및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지원액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0. : 공기관위탁사업비 지급(1~5차) 및 대중교통비 환급
 - 2025. 11. ~ 12. : 공기관위탁사업비 지급(6차) 및 대중교통비 환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2024년 공기관위탁사업비 지급 : 2,880,000천원
2025	- 2025년 공기관위탁사업비 지급 : 4,124,8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880,000	2,880,000	-	-	
2025	5,460,000	4,124,800	-	1,335,2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The 경기패스(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수 3,281명(월 60회 초과 이용자 및 1일 2회 초과 이용자)		
사업목적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대한 환급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5호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32,196	478,271	217,858	0	0	182,622	77,791	346,07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2,196	478,271	217,858			182,622	77,791	346,0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7,791	
The 경기패스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478,271천원 - (기정) 400,480천원	= 77,791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예산 반영 필요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이용요금 환급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패스 이용자 지속 증가 및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지원액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2025년 The 경기패스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차 납부(김포시→ 경기도)

- 2025. 09. : 2025년 The 경기패스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차 납부(김포시→ 경기도)

- 2025. 11. ~ 12. : 2025년 The 경기패스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3차 납부(김포시→ 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132,196천원
2025	- 2025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400,48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32,196	132,196	-	-	
2025	400,480	400,48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층 전기저상버스 9대		
사업목적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6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저상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940,000	3,050,080	0	0	0	305,008	2,745,072	-889,920	
국비	2,400,000	1,800,000				180,000	1,620,000	-600,000	
도비	390,000	625,040				62,504	562,536	235,040	
시비	1,150,000	625,040				62,504	562,536	-524,9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45,072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305,008천원 * 9대(2층 전기버스)	= 2,745,072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운행중인 2층 경유버스를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내구연한이 도래한 2층 경유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2층 전기저상버스 9대분의 구입비 지원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3.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4. 06.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투입
- 2024. 09.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5. 12. : 2층 전기·저상버스 8대 출고 예정
- 2026. 01.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출고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실적없음
2024	· 2층 전기저상버스 10대 보급 지원
2025	· 실적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940,000	3,940,000	-	-	
2025	305,008	-	-	305,00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층 전기저상버스 9대		
사업목적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6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저상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0,000	900,000	0	0	0	90,000	810,000	-20,000	
국비	460,000	450,000				45,000	405,000	-10,000	
도비	230,000	225,000				22,500	202,500	-5,000	
시비	230,000	225,000				22,500	202,500	-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10,000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90,000천원 * 9대(2층 저상버스)	= 810,0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운행중인 2층 경유버스를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내구연한이 도래한 2층 경유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2층 전기저상버스 9대분의 구입비 지원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3.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4. 06.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투입
- 2024. 09.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5. 12. : 2층 전기·저상버스 8대 출고 예정
- 2026. 01.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출고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실적없음
2024	· 2층 전기저상버스 10대 보급 지원
2025	· 실적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920,000	920,000	-	-	
2025	90,000	-	-	9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CNG 저상버스 27대(대당 5백만원 지원)		
사업목적	연료비 및 정비비 등 운행비용 일부 보전을 통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2,500	130,000	250,000	0	0	0	-120,000	-102,500	
국비		0						0	
도비	46,500	39,000	75,000				-36,000	-7,500	
시비	186,000	91,000	175,000				-84,000	-9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0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경정 (130,000천원) - 기정 (250,000천원)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CNG 저상버스에 운영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 예산증감 사유

- 폐차 및 연속 15일 초과 미운행 차량 등을 제외함에 따라 지원 대상 저상버스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6. : 상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
 - 2025. 12. : 하반기 운영비 보조(2,500천원/대)
 - 2025. 12. : 최종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상반기 36대분 × 2,500천원 = 90,000천원 지원 - 하반기 28대분 × 2,500천원 = 57,500천원 지원
2024	- 상반기 29대분 × 2,500천원 = 72,500천원 지원 - 하반기 24대분 × 2,500천원 = 65,000천원 지원
2025	- 상반기 25대분 × 2,500천원 = 62,500천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7,500	147,500	-	80,000	
2024	232,500	137,500	-	95,000	
2025	250,000	62,500	-	187,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선진상운(주)		대표자	신재호	
사업목적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แท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556,305	1,217,880	2,446,224	0	0	-778,344	-450,000	-338,425	
시비	1,556,305	1,217,880	2,446,224			-778,344	-450,000	-338,425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450,000	-450,000	0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경정 1,217,880천원 - 기정 1,667,880천원 =	-450,000	-450,000		

□ 예산요구 사유

- 비수익 노선으로 업체 손실에도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노선에 운행손실을 지원하여 노선 유지
- 골드라인 혼잡률 분산 대책으로 주요역사(고촌역) 인근 아파트출발 출근 급행버스 운행을 위해 전세버스의 임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공급

□ 예산증감 사유

- 70번(출근) 노선 차량이 전세버스에서 운수업체 자체 예비차로 변경됨에 따라 운송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1,357,412천원 지급
2024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1,478,350천원 지급
2025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1개소(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상반기 가지급 1,005,320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492,992	1,357,412	-	135,580	
2024	1,556,305	1,478,350	-	77,955	
2025	1,667,880	1,005,320	-	662,5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운송업체 3개		
사업목적	시내버스 업체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발전 및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제4호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9,646	0	303,764	0	0	0	-303,764	-379,64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79,646	0	303,764				-303,764	-379,64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3,764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0원 - (기정) 303,764천원	= -303,764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예산 편성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2025년도 사업비 전액 감액(자치단체간부담금 포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시→도)
 - 2025. 11. : 시군부담지시서 감액내시 시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금 지급 : 283,513,000원 지원(시내버스업체 3개사)
2024	·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금 지급 : 379,646,000원 지원(시내버스업체 3개사)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시→도) : 303,764,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513	283,513	-	-	
2024	379,646	379,646	-	-	
2025	303,764	303,764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한강이음 버스 6대			
사업목적		신도시 교통취약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테마공원 연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 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760,000	760,000	798,000	0	0	0	-38,000	0	
국비	380,000	380,000	399,000				-19,000	0	
도비		0						0	
시비	380,000	380,000	399,000				-19,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8,000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201-02 공공운영비	. 한강이음버스 6대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경정) 88,000천원 - (기정) 110,000천원	= -22,00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한강이음버스 운행손실 지원 (경정) 672,000천원 (56,000천원 * 12개월) - (기정) 688,000천원 (57,333천원 * 12개월)	= -16,000	

□ 예산요구 사유

○ 한강이음버스 6대 운행 손실 전액 보조 및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한강이음버스 운행 손실 및 운영비 지원
 - 2026. 1. : 최종 집행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649,970천원)
2024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644,076천원)
2025	· 도시형 교통모델(한강이음버스) 손실재정지원 및 운영비 지원(418,08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50,000	649,970	-	30	
2024	760,000	644,076	-	110,030	
2025	798,000	418,080	-	379,9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ست팀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대광위 광역버스 11개 노선		
사업목적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지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244,313	5,692,598	7,153,000	0	0	-1,230,589	-229,813	1,448,28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44,313	5,692,598	7,153,000			-1,230,589	-229,813	1,448,28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9,813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5,692,597,660원 - (기정) 5,922,411,000원	= -229,813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5년 대광위 총사업비가 감소하여 우리시 부담금 추가 감액(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자치단체간부담금 1차 지급(시→도)
 - 2025. 04. : 자치단체간부담금 2차 지급(시→도)
 - 2025. 06. : 시군부담지시서 감액내시(4차) 시달
 - 2025. 10. : 시군부담지시서 변경내시(5차,6차) 시달
 - 2025. 11. : 시군부담지시서 변경내시(7차) 시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3,155,851,000원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546,813,000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5,922,411,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58,351	3,155,851	302,500	-	
2024	4,546,813	4,546,813	-	-	
2025	5,922,411	5,922,411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경기도 공공버스 7개 노선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1항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773,597	7,925,487	3,826,097	0	0	3,792,289	307,101	-1,848,1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773,597	7,925,487	3,826,097			3,792,289	307,101	-1,848,1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7,101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7,925,487천원 - (기정) 7,618,386천원	= 307,101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운행 실적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 김포시 부담액 증가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자치단체간부담금 1차 지급(시→도)
- 2025. 05. : 시군부담지시서 증액내시(1차) 시달
- 2025. 06. : 자치단체간부담금 2차 지급(시→도)
- 2025. 11. : 시군부담지시서 증액내시(2차) 시달
- 2025. 12. : 자치단체간부담금 3차 지급(시→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973,280,000원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11,662,833,000원 ※ 이월액 1,889,236천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3,826,097,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862,516	4,973,280	1,889,236	-	
2024	11,662,833	11,662,833	-	-	
2025	7,618,386	3,826,097	-	3,792,28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노선 5개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해당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015,582	5,321,240	4,250,377	0	0	0	1,070,863	2,305,65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015,582	5,321,240	4,250,377				1,070,863	2,305,65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70,86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5,321,240천원 - (기정) 4,250,377천원	= 1,070,863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5개의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예산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사업비 실제 집행 결과 부족분 발생하여 김포시 추가 부담액 증가(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시군부담지시서 변경내시 시달
 - 2025. 12.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시→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3,015,582,000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4,250,377,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015,582	3,015,582	-	-	
2025	4,250,377	4,250,377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30명		
사업목적	김포시 관내 법인택시(3개사)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
		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 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 비율이 과반 이상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2,000	316,800	276,000	0	27,600	0	13,200	34,800	
국비		0						0	
도비	197,400	221,760	193,200		19,320		9,240	24,360	
시비	84,600	95,040	82,800		8,280		3,960	10,4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20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경정(110,000원*240명*12월) - 기정(110,000원*230명*12월)	= 13,200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증가 (230명 → 240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5. 01.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1인/월 지원액 증가 10만원 → 11만원)
 - 2025. 01. ~ 12. : 사업비 집행
 - 2025. 09.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운수종사자 지원대상 증가 230명 → 240명)
 - 2026. 0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2,374명 지원 / 166,180,000원 (월7만원 지원)
2024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2,663명 지원 / 266,300,000원 (월10만원 지원)
2025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2,082명 지원 / 229,020,000원 (월11만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7,240	166,180	-	11,060	
2024	282,000	266,300	-	15,700	
2025	303,600	229,020	-	74,5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사업목적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6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3,940,000	3,050,080	0	0	0	305,008	2,745,072	610,016	
국비	2,400,000	1,800,000				180,000	1,620,000	360,000	
도비	390,000	625,040				62,504	562,536	125,008	
시비	1,150,000	625,040				62,504	562,536	125,008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610,016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305,008천원 * 2대(2층 전기버스)	= 610,016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차량 제작사 생산지연으로 2025년 내 8대만 출고 가능하여, 미출고 2대분 보조금은 2026년 집행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3.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4. 06.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투입
 - 2024. 09.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5. 12. : 2층 전기·저상버스 8대 출고 예정
 - 2026. 01.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출고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실적없음
2024	· 2층 전기저상버스 10대 보급 지원
2025	· 실적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940,000	3,940,000	-	-	
2025	305,008	-	-	305,00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사업목적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6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920,000	900,000	0	0	0	90,000	810,000	180,000	
국비	460,000	450,000				45,000	405,000	90,000	
도비	230,000	225,000				22,500	202,500	45,000	
시비	230,000	225,000				22,500	202,500	45,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90,000천원 * 2대(2층 저상버스) =	18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차량 제작사 생산지연으로 2025년 내 8대만 출고 가능하며, 미출고 2대분 보조금은 2026년 집행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3.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4. 06.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투입
 - 2024. 09.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5. 12. : 2층 전기·저상버스 8대 출고 예정
 - 2026. 01.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출고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실적없음
2024	· 2층 전기저상버스 10대 보급 지원
2025	· 실적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920,000	920,000	-	-	
2025	90,000	-	-	9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저상버스 도입보조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저상버스 56대(대당 90백만원 지원)		
사업목적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7조(저상버스 지원)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5,152,000	5,040,000	5,040,000	0	0	0	0	450,000	
국비	2,576,000	2,520,000	2,520,000					225,000	
도비	386,400	378,000	378,000					33,750	
시비	2,189,600	2,142,000	2,142,000					191,25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0	
저상버스 도입보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저상버스 90,000천원 * 5대 =	45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차량 제작사 생산지연으로 미출고 5대분 보조금은 2026년 집행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9. : ‘25년도 저상버스 수요조사
 - 2024. 10. :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5. 01. ~ 12. : 저상버스 도입 및 보조금 교부
 - 2025. 12. : 집행실적 보고 및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저상버스 5대 도입
2024	- (시내)저상버스 38대 도입 (이월 23대) - (마을)저상버스 14대 도입
2025	- (시내)저상버스 26대 도입 (이월 1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76,000	460,000	2,116,000	2,300,000	
2024	7,268,000	6,900,000	361,000	7,000	
2025	5,401,000	2,410,000	-	2,991,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마을버st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행정6급 이선미	전화	2456 5917
-----	-------	-----------------------------	-----	----------------------	----	--------------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수요응답형 버스 10대		
사업목적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운행 효율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920,000	1,825,000	1,825,000	0	0	0	0	70,000	
국비		0							
도비	576,000	547,500	547,500					21,000	
시비	1,344,000	1,277,500	1,277,500					49,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최종예산액 (1,922,000천원) - 기집행액 (1,228,153천원) - 집행예정액 (623,847천원)	= 7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26년도 예산으로 활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사업비 집행
 - 2026. 01. : 명시이월 예산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수사업자 손실 지원금 지급(6~12월 운행분) : 961,060천원
2024	- 운수사업자 손실 지원금 지급(1~12월 운행분) : 1,815,119천원 (97,000천원 명시이월)
2025	- 운수사업자 손실 지원금 지급(1~8월 운행분) : 1,228,15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00,000	961,060		838,940	
2024	1,920,000	1,815,119	97,000	7,881	
2025	1,922,000	1,228,153	-	693,84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7급 김민우	전화	5554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건설도로과
기 정 액	7,941,342천원	요 구 액	71,49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78,000	520,000	637,000	-54,000	-63,000	-158,000	
재산임대수입/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465,000	360,000	383,000	0	-23,000	-105,000	허가취소 및 기간만료에 따른 감액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48,000	40,000	50,000	0	-10,000	-8,000	허가취소 및 기간만료에 따른 감액
사용료수입/공유수면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165,000	120,000	204,000	-54,000	-30,000	-45,000	허가취소 및 기간만료에 따른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0	144,602	105	0	144,497	144,602	
기타수입/그외수입 ◎그외수입	0	150	105	0	45	150	기간제 근로자 보령료 환급
기타수입/그외수입 ◎정부합동감사 용역비 환수금	0	15,406	0	0	15,406	15,406	정부합동감사 결과 용역비 환수
기타수입/그외수입 ◎경기도종합감사 환수금(월곶 대로3-1호선)	0	66,661	0	0	66,661	66,661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물가변동 정산 환수
기타수입/그외수입 ◎경기도종합감사 환수금(월곶 중로3-3호선)	0	20,000	0	0	20,000	20,000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물가변동 정산 환수
기타수입/그외수입 ◎월곶대로3-1호선 통신주 이설 정산 환급금	0	31,629	0	0	31,629	31,629	통신주 이설 완료에 따른 정산 환급금
기타수입/그외수입 ◎월곶대로3-1호선 교통표지 선고지	0	4,213	0	0	4,213	4,213	관급자제 선고지 후 최종 정산환급금
기타수입/그외수입 ◎경기도종합감사 환수금(누산- 마곡간(하사교) 도로확포장공사)	0	6,543	0	0	6,543	6,543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물가변동 정산 환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000	45,000	55,000	0	-10,000	-10,000	
변상금/변상금 ◎변상금	55,000	45,000	55,000	0	-10,000	-10,000	부과 건수에 따라 감액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6.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농어촌도로
사업규모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목적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 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00,000	0	0	200,000	0	0	2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200,000			200,000			2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 전력환경영향평가, 기후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2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해당 용역은 '26. 11. 준공 예정임에 따라 준공금 지급을 위해 명시이월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별도 용역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필요
 - ※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진행 단계에 따른 개별 용역 추진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 착수
 - 2026. 3. :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 용역 착수
 - 2026.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25. 11.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 착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0	-	-	2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임현호	전화	2438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도로관리과
기 정 액	5,429,084천원	요 구 액	315,80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2,270,000	2,520,000	2,200,000		320,000	250,000	
사용료수입/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	2,270,000	2,520,000	2,200,000	0	320,000	250,000	신규허가에 따른 부과 건수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31,400	880,731	30,000	858,660	-7,929	849,331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노후 관용차량 폐차대금	1,400	1,200	0	0	1,200	-200	차량 불용결정에 따른 폐차 대금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노후 살포기 및 제설기 고재처리대금		4,262			4,262		고재(살포기, 제설기) 및 폐기물 처리 대금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가로보안등 및 잡철물 등 고재처리대금		3,619			3,619		고재(터널등, 전선 등) 처리 대금
기타수입/그외수입 ◎근로자 보험료 정산 등	30,000	871,650	30,000	858,660	-17,010	841,650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부담 종료에 따른 감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3,737	0	0	3,737	3,737	
변상금/변상금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0	3,737	0	0	3,737	3,737	도로무단점용 정비에 따른 세입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통신공사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5. ~ 2026. 2.	사업위치	운양2 지하차도 외 3개소	
사업규모		지하차도 4개소(운양2, 운양3, 운유지하차도, 통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8개 설치			
사업목적		자동차단시설 미설치된 지하차도 4개소에 차량진입 자동차단설비 설치 및 통합연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해당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4,336,217	7,592,153	6,409,153	0	983,000	200,000	0	450,000	
국비		0							
도비	83,600	0							
시비	4,252,617	7,592,153	6,409,153		983,000	200,000		45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지하차도 4개소 자동차단시설 및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통신공사 =	45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현재 지하차도 별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장비간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배수펌프, CCTV, 전광판 등의 지하차도 현장장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제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중임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통신공사 절대 공기가 60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 조사
 - 2025. 06. ~ 09.: 자동차단시설 전기·통신공사 및 통합관제시스템 실시설계
 - 2025. 10. : 자동차단시설 물품 구매
 - 2025. 11.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기 및 통신공사 착공
 - 2026. 02. : 전기 및 통신공사 준공 지하차도 현장 장비 통합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복변교 외 9개소 보수보강공사 등
2024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갈산교 통신관로 가이설 공사 - 운양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전기공사 등
2025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계양천1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 풀잎교 보수보강공사 - 백운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 장기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 보수공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68,134	3,433,711	627,953	206,470	
2024	4,964,170	4,209,035	628,355	126,780	
2025	8,220,508	6,334,094	-	1,886,4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김승환	전화	4583
-----	-------	------------	-----	----------	----	------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5. ~ 2026. 2.	사업위치	운양2 지하차도 외 3개소
사업규모	지하차도 4개소(운양2, 운양3, 운유지하차도, 통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8개 설치		
사업목적	자동차단시설 미설치된 지하차도 4개소에 차량진입 자동차단설비 설치 및 통합연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도로법	제31조 제1항
	위임규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해당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500,000	2,000,000	0	2,000,000	0	0	0	2,000,000	
국비		0							
도비	25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시비	250,000	1,000,000		1,000,000				1,000,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0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 운양2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 500,000	지하차도별 차량진입 차단설비 설치
		· 운양3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 500,000	
		· 운유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 500,000	
		· 통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 5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현재 지하차도 별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장비간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배수펌프, CCTV, 전광판 등의 지하차도 현장장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제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중임
- 자동차단시설 설치 및 통합프로그램 구축 소요기간이 약 4개월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5.: 자동차단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 조사
 - 2025. 06. ~ 09.: 자동차단시설 전기·통신공사 및 통합관제 시스템 설계
 - 2025. 10. : 자동차단시설 물품 구매
 - 2025. 11. : 자동차단시설 설치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공사
 - 2026. 02. : 지하차도 현장장비 통합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 운양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2025	·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물품구매 및 전기·통신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00,000	400,686		99,314	
2025	2,000,000	-	-	2,0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지하차도 4개소(운양2, 운양3, 운유, 통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월 요구액 (천원)	2,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위치	운양2 지하차도 외 3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운유 지하차도 운양2 지하차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김승환	전화	4583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일반운영비)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1. 15. ~ 2026. 9. 30.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제설차량 51대 임차운영 및 제설장비 138대		
사업목적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및 도로안전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422,150	2,073,903	173,900	0	0	1,900,003	0	1,962,321	
국비		0							
도비		0							
시비	1,422,150	2,073,903	173,900			1,900,003		1,962,321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962,321	
도로 설해대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1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 10,500,000원/월*31대*4월 = 1,302,000 · 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 8,500,000원/월*9대*4월 = 306,000 · 1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 7,200,000원/월*3대*4월 = 86,400 · 06w 굴삭기 임차용역 : 11,500,000원/월*3대*4월 = 138,000 · 크레인 등 제설작업 준비용 장비 임차 : 1,500,000원/일*13일 = 19,500 · 제설전진기지 물품 및 비상근무자 방한용품 등 구입 : 180,000원*4월*4개소 = 2,880 · 제설함, 제설제 보관천막 등 제설작업 보조용품 구입 : 1식 = 9,000 · 제설구역현황도 제작 : 1식 = 5,000		
	201-02 공공운영비	· '24~'25년 읍면 마을제설반 트럭차 유류대 지급 : 경정(23,650,000원)-기정(14,000,000원) = 9,650 · '25~'26년 제설차량 유류비 지급 : 701,780원*51대 = 35,791 ·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유지관리 : 650,000원*74대 = 48,1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차년도 초(1월~3월) 강설 상황발생 즉시 집행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유류 구매비 등 사업비 명시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6. 03.: 제설차량 임차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살포기 57대, 제설기 12대 수리 · 자동염수분사장치 29개소 및 제설기지 4개소 공공요금 납부
2024	· 살포기 48대, 제설기 17대 수리 · 자동염수분사장치 29개소 및 제설기지 4개소 공공요금 납부
2025	· 살포기 54대, 제설기 2대 수리 · 자동염수분사장치 30개소 및 제설기지 4개소 공공요금 납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1,547	1,061,878	1,651,374	118,295	
2024	3,073,524	1,364,358	1,569,390	139,776	
2025	3,643,293	1,417,288	-	2,226,00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재료비)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1. 15. ~ 2026. 2. 28.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친환경 제설제 249,116kg		
사업목적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적기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000,000	1,000,000	0	0	0	1,000,000	0	66,016	
국비		0							
도비		0							
시비	1,000,000	1,000,000				1,000,000		66,016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66,016	
도로 설해대책 운영	206-01 재료비	· 친환경 제설제 구매 : 265원*249,116kg =	66,016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차년도 초(1월~3월) 강설 상황발생 즉시 집행하기 위한 제설제 구입비 명시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제설제 구매 집행 의뢰
 - 2026.02. : 제설제 납품 및 비용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친환경제설제 250톤 구매
2024	· 염화칼슘 2,100톤 및 친환경제설제 327톤 구매
2025	· 염화칼슘 1,800톤 및 친환경제설제 1,984톤 구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9,000	108,065	607,245	13,690	
2024	1,607,245	715,300	891,945	0	
2025	1,891,945	1,290,487		601,45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시계획과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및 정비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사업규모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시계획 도형 및 속성자료 구축		
사업목적	도시계획 관련 자료 현행화 및 누락된 고시자료 등을 재정비하여 신뢰도 높은 도시계획정보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80,000	180,000	0	0	0	0	80,050	
국비		0							
도비		0							
시비		180,000	180,000					80,05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80,050	
도시계획정보 체계(UPIS) DB 현행화 및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및 정비 용역 평가 수수료 ※ 조달청 수수료 지급 예정	3,050	
	401-01 시설비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현행화 및 정비 용역 준공금 ※ '26. 6월 용역 준공 예정	77,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용역 준공 기한 및 조달 수수료 지급 기한 미도래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함('26. 6월 준공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동의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2024.10. 반영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용역발주 및 계약의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2025. 4.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025. 5. : 과업 착수
 - 2025. 5. : 선금 지급(계약금 70%지급)
 - 2026. 6. : 준공(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6.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현행화 및 정비용역 조달청 기술위원 평가수당 지급 (1,750천원) - 2023. 7.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현행화 및 정비용역 선금 지급(계약금액 70%)
2024	- 2024. 6.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현행화 및 정비용역 준공 (준공금: 48,000천원)
2025	- 2025. 4.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현행화 및 정비용역 조달청 기술위원 평가수당 지급(1,950천원) - 2025. 5. 김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현행화 및 정비용역 선금 지급 (계약금액 7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1,750	113,750	48,000	-	
2024	48,000	48,000	-	-	
2025	180,000	99,950	-	80,050	10.31.기준 집행현황

※ 집행액 : 용역 선금 98,000천원 + 조달청 기술위원 평가수당1,950천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8급 임예빈	전화	2325
-----	-------	------------	-----	----------	----	------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6.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김포시 전역(276.6km ²)에 대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제도개선		
사업목적	관내 주요 지역에 대한 전략적·효과적 개발과 기반시설 중심 지역개발 거점발굴 및 통합적 도시계획수립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토기본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2조)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3조, 제24조 제1항
		(제3조)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2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741,750	750,000	0	0	0	-8,250	264,000	
국비		0							
도비		0							
시비		741,750	750,000				-8,250	264,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64,000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 김포시 도시발전 구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금 ※ '26. 12월 용역 준공 예정	= 264,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용역 준공 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함('26. 12월 준공 예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원안가결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2024.11. 반영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용역 착수
 - 2025. 11.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6. 11. : 도시발전구상 및 제도정비(안) 확정
 - 2026.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용역사 선정 및 용역 착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50,000	477,750	-	272,250	10.31.기준 집행현황

※ 집행액 : 용역 선금 467,0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 평가수당 1,750천원/ 집행잔액 : 조달 수수료 8,250천원(자체 선정)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담당자	시설7급 조완희	전화	2440
-----	-------	------------	-----	----------	----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풍곡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5호)개설공사]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19. 1. ~ 2028. 12.	사업위치	고촌읍 풍곡리 일원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L=1,816m, B=8~10m)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70,000	1,734,050	1,734,050	0	0	0	0	572,622	
국비	136,000	867,025	867,025					286,311	
도비		0							
시비	34,000	867,025	867,025					286,311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572,62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1-01 시설비	· 풍곡도시계획도로(소1-106호외2개) 개설공사	= 572,622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풍곡도시계획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연차별 사업으로 [1구간] 준공, [2구간]은 손실보상협의 및 재결 완료 후 도급공사 착공하였음. [3, 4구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관급자재비 등을 이월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4. ~ 2022. 10. : 실시설계, 보상 및 공사(1구간)
 - 2022. 11. ~ 2023. 8. : 실시설계용역(2구간)
 - 2023. 9. ~ 2025. 6. :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2구간)
 - 2025. 6. ~ 2026. 12. : 공사 착공 및 준공(2구간)
 - 2026. 1. ~ 2027. 12. : 손실보상협의(3,4구간)
 - 2027. 6. ~ 2028. 12. : 공사 착공 및 준공(3,4구간)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10,165,000	5,470,950	1,734,050	1,734,050	0	0	0	0	2,960,000	
공 정 별	설계비	300,000	300,000	0							
	보상비	5,926,050	3,787,000	867,025	867,025					1,272,025	
	공사비	3,938,950	1,383,950	867,025	867,025					1,687,975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실시설계용역 및 손실보상협의
2024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손실보상협의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20호,소2-60호,소2-61호)개설공사[3,4구간] 실시설계용역
2025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106호,소2-105호,소2-106호)개설공사[2구간] 손실보상협의, 재결 및 공사착공 풍곡 도시계획도로(소1-20호,소2-60호,소2-61호)개설공사[3,4구간] 실시설계용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49,075	315,952	1,530,123	-	
2024	1,700,123	1,086,161	613,962	-	
2025	2,348,012	1,727,879	-	620,13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L=1,816m, B=8~10m	이월 요구액 (천원)	572,622
부기명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풍곡도시계획도로(소1-106호, 소2-105호) 개설공사]	사업위치	고촌읍 풍곡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장 문정수	담당자	시설6급 나종민	전화	2451
-----	-------	--------------	-----	----------	----	------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조정 용역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6.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업규모	195.862km ²		
사업목적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지 선정 및 건의, 조정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전산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2,000	22,000	0	0	0	0	8,140	
국비		0							
도비		0							
시비		22,000	22,000					8,14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8,140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조정 용역	401-01 시설비	·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조정 용역 준공금 ※ '26. 6월 용역 준공 예정	= 8,14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사유) 현재 국방부 심의 진행중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는 합참 및 국방부의 최종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고시됨. 금년 중 해당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업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해제·완화) 결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반영하지 못해 과업을 종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필요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 확정 이후에만 최종 보고서 작성 및 결과 정리가 가능함.
국방부 심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역을 종결할 경우 행정적·기술적 불완전성 발생 우려.
사업의 연속성과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한 명시이월이 필요함.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24. : 수의계약
 - 2025. 6. 27. : 용역 착수
 - 2025. 7. 24. : 선금 지급
 - 2026. 4.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예정)
 - 2026. 6. :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작성 및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사항 없음(본예산 이월)
2024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지형도면 등재('24. 6. 11.)
2025	- 용역 계약 및 착수('25. 6. 27.), 선금지급('25. 7. 24.)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000	-	22,000	-	
2024	22,000	19,800	-	2,200	
2025	22,000	13,860	-	8,14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시계획과	사업규모	195.862km ²	이월 요구액 (천원)	8,140
부기명 (세부사업)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조정 용역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장경철	담당자	시설9급 전류민	전화	2442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주택과



(주택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주택과
기 정 액	26,336,893천원	요 구 액	147,336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0	48	10	2	36	-12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60	32	10	2	20	-28	부서계좌 상·하반기 이자수입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024년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잔여) 이자발생액	0	16	0	0	16	16	2024년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의 잔여단지(2개 단지) 정산결과 발생한 (잔여)이자수입을 세입반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00	137,300	30,000	57,000	50,300	37,300	
과태료/기타과태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	100,000	85,000	30,000	0	55,000	-15,0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주거급여 환수액	0	52,300	0	57,000	-4,700	52,300	세입 추계에 따른 조정

기초생활 임차급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9,170여 가구		
사업목적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급여법	제2조, 제7조, 제8조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3,969,608	25,898,251	25,798,251	0	0	0	100,000	1,928,643	
국비	21,572,648	23,308,426	23,218,426				90,000	1,735,778	
도비	1,677,872	1,812,878	1,805,878				7,000	135,006	
시비	719,088	776,947	773,947				3,000	57,85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각 가구특성별 임차료 지급 경정(25,898,251,000원)-기정(25,798,251,000원)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급여(전·월세)를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12월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분 부족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12. :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 및 지급
 - 2026.01. : 임차급여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 : 7,972가구(11,951명) / 월평균 소요예산 1,709,082천원
2024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 : 8,732가구(13,015명) / 월평균 소요예산 1,942,861천원
2025	- 주거급여 월평균 지원 : 9,170가구(13,639명) / 월평균 소요예산 2,142,76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43,324	20,500,675	-	542,649	
2024	23,969,608	23,314,337	-	655,271	
2025	25,798,251	21,427,356	-	4,370,89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복지8급 정진희 행정9급 변혜수	전화	2416 2417 2414
-----	-----	------------	-----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청년 275여명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660,000	1,031,000	734,000	0	0	297,000	0	220,000	
국비	330,000	515,500	367,000			148,500		110,000	
도비	99,000	154,650	110,100			44,550		33,000	
시비	231,000	360,850	256,900			103,950		77,00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임대료 월 최대200천원까지 지원 - 275명*200천원*4월	= 22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청년월세는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024.3월~2025.2월, 지급기간은 2024.3월 ~ 2027.12월임에 따라 2025년 대상자의 잔여 지급분에 대해서 2026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2025.0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 2024.03.~2025.05. : 신청자에 대한 (부)적합 보장결정 및 통지
 - 2024.03.~2027.12. : 청년월세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자 : 207명(월평균 48,936천원)
2024	- 지원대상자 : 246명(월평균 61,548천원)
2025	- 지원대상자 : 385명(월평균 83,81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84,738	587,238	208,000	789,500	
2024	868,000	738,581	129,419	-	
2025	1,160,419	838,134	-	322,28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복지8급 정진희 행정9급 변혜수	전화	2416 2417 2414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건축과



(건축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건축과
기 정 액	1,304,072천원	요 구 액	8,2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	200	-	-	200	200	
기타수입/그외수입 ◎공공건축물 정산 부적정 금액 환수	-	200	-	-	200	200	공공건축물 정산 부적정 금액 환수금
지방행정제제 · 부과금	10,640	14,000	6,000	0	8,000	3,360	
과태료/기타과태료 ◎건축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10,640	14,000	6,000	0	8,000	3,360	건축물관리법 등 과태료 부과금 증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실태조사)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8. ~ 2026. 8. 31.	사업위치	김포시 농촌 지역
사업규모	100호 빈집실태조사		
사업목적	김포시 내 빈집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관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8,000	0	0	0	8,000	0	8,000	
국비		4,000				4,000		4,000	
도비		0				0			
시비		4,000				4,000		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농촌 빈집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 업무대행 : 80,000원*100호 =	8,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국비보조금이 2025년 하반기에 배정됨에 따라 3회추경 시비 배정으로 사업(국비 50%, 시비 50%)이 편성됨. 향후 빈집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됨

- 농촌지역 빈집 현황을 파악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민간활용 등을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므로 명시이월이 필요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신청
 - 2025. 8. : 국고보조금 배분
 - 2025. 10. : 제3회 추경 시비 배정
 - 2026. 1. : 농촌 빈집실태조사 업무대행 협약
 - 2026. 7. : 농촌 빈집실태조사 완료
 - 2026. 8. :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사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000	-	-	8,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6급 조한욱	전화	2386
-----	-----	------------	-----	----------	----	------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거물대2리 경로당)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7. ~ 2027.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경로당 1개소(연면적 154.05㎡, 지상2층)		
사업목적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및 재실환경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은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186,390	0	0	0	186,390	0	186,390	
국비		130,470				130,470		130,470	
도비		16,776				16,776		16,776	
시비		39,144				39,144		39,144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86,39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01-01 시설비	. 설계비 : 18,050,000원 . 공사비 : 165,529,000원	= 183,579	
	401-02 감리비	. 감리비 : 2,811,000원	= 2,811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2025년 10월 확정(통보)됨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그린리모델링 대상시설 현황조사 제출
- 2025. 4. : 본 사업 공모 신청
- 2025. 6. :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선정 발표 및 사업비(보조금) 교부 신청
- 2025. 10. : 국도비 보조금 교부
- 2026. 1. : 설계용역 발주
- 2026. 3. : 공사 발주 및 계약
- 2026. 10.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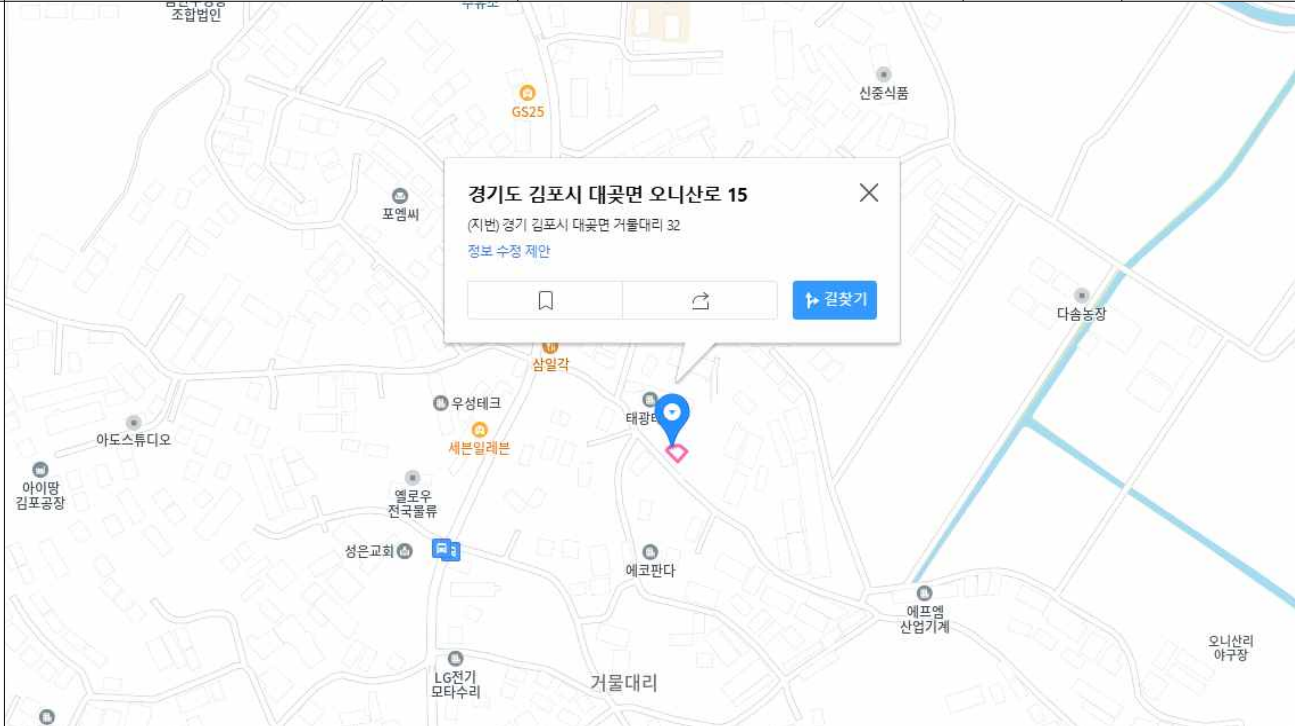
2023	-
2024	· 12월 : 2025년 그린리모델링 희망 건축물 제출(경로당 2개소, 도서관 1개소)
2025	· 4월 : 사업컨설팅 중간보고서 접수 및 공모사업 신청(경로당 2개소, 도서관 1개소) · 6월 : 공모사업 대상 선정(경로당 1개소) · 10월 :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86,390	-	-	186,39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연면적 154.05㎡, 지상2층	이월 요구액 (천원)	186,390
부기명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오니산로 15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2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9급 이진혁	전화	5064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토지정보과
기 정 액	3,603,986천원	요 구 액	-210,00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300,000	2,200,000	2,410,000	0	-210,000		
과징금/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0	0	10,000	0	-10,000	0	납부 기간 미도래
부담금/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수입	3,300,000	2,200,000	2,400,000	0	-200,000	-1,100,000	건설경기 약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과수입 감소

민원실 냉장고 구입

사업기간	2025. 12.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민원동 1층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민원실냉장고 1대 구입		
사업목적	민원실 내 냉장고를 구입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00	0	0	0	0	600	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					600	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	
부동산관련 민원처리 업무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냉장고 구입 600,000원× 1대	= 600	

□ 예산요구 사유

- 민원실 내 냉장고 구입을 통한 직원 편의성 개선 및 민원 응대 효율성 제고
- 부서 소유 소형 냉장고의 노후화(내부파손)로 소음 및 기능 저하

□ 예산증감 사유

- 과 내 냉장고 노후되어(2012년 구입한 냉장고로 내용연수 10년 초과) 고장이 잦고 단종된 모델로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움
- 직원들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교체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냉장고 구입 계약 체결 및 물품 납품 및 검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권효섭	담당자	시설7급 박민진	전화	2145
-----	-------	------------	-----	----------	----	------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농업정책과
기 정 액	20,223,833천원	요 구 액	-1,003,104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420	242	0	0	242	194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농업기술센터청사 지하수 관측공 설치	0	8	0	0	8	8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관측 임대료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농업기술센터 도시가스관 임대료	414	228	0	0	228	186	인천도시가스 도시가스관 임대료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 ◎농업기술센터 전기차충전기 전력 공급용 전주설치 임대료	6	6	0	0	6	0	한국전력공사 전기차충전기 임대료
임시적세외수입	0	682	0	0	682	682	
기타수입/그외수입 ◎유류포인트 환급금	0	77	0	0	77	77	공공조달 유류카드 포인트 환급
기타수입/그외수입 ◎계좌잔액(휴면계좌 등)	0	605	0	0	605	605	농업기술센터 휴면계좌 해지, 카드 결제계좌 잔액 발생에 따른 세입조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000	31,193	0	5,393	25,800	-30,807	
과태료/기타과태료 ◎농약관리법 과태료	2,000	1,884	0	1,084	800	-116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환수금/부정이익환수금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60,000	29,309	0	4,309	25,000	-30,691	감사원 정기감사 관련 환수

농지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농업정책과, 각 읍·면
사업규모	시(농업정책과) 및 각 읍·면 농지위원회 7개(전체위원 72명)		
사업목적	농지 취득 시 자격심사를 통하여 농지의 적정 소유·이용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지법	제44조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63,000	79,800	89,800	0	0	0	-10,000	16,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3,000	79,800	89,800				-10,000	16,8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농지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 경정(79,800,000원) - 기정(89,800,00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법 개정으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도입에 따른 위원 심의수당 및 위원회 운영경비
- 농지보전부담금(농지관리기금) 수납액의 4% 범위내에서 지출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지급 받음

□ 예산증감 사유

- 위원회 심의대상건수 감소에 따른 농지위원회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8. ~ 2023. 12. : 읍·면 및 농업정책과 각 농지위원회 운영
 - 2024. 1. ~ 12. : 읍·면 및 농업정책과 각 농지위원회 운영
 - 2024. 8. : 읍·면 및 농업정책과 농지위원회 구성(읍·면 및 농업정책과 7개 위원회, 임기2년)
(기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구성)
 - 2025. 1. ~ 12. : 읍·면 및 농업정책과 각 농지위원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농지위원회 구성 : 시·읍·면 7개 위원회, 위원 75명 ○ 농지위원회 21회 개최
2024	○ 농지위원회 구성 : 시·읍·면 7개 위원회, 위원 72명 ○ 농지위원회 46회 개최
2025	○ 농지위원회 구성 : 시·읍·면 7개 위원회, 위원 72명 ○ 농지위원회 54회 개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500	38,500	-	17,000	
2024	63,000	49,776	-	13,224	
2025	89,800	50,067	-	39,73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8급 김승현	전화	4264
-----	-------	------------	-----	----------	----	------

불법농지 감정평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목적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8. 17.>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56,000	25,000	56,000	0	0	0	-31,000	-3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000	25,000	56,000				-31,000	-3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000	
불법농지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 경정(500,000원*50필지) - 기정(800,000원*70필지) =	-31,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산정 시에 감정평가액 산출을 위한 수수료 발생
- 농지보전부담금(농지관리기금) 수납액의 4% 범위내에서 지출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지급 받음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을 예측할수 없으나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 감정평가 대상 사업량 감소로 과년도 대비 일부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8.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규정 신설
 - 2022. 7. ~ 9. : 감정평가 의뢰(3건)
 - 2023. 1. ~ 12. : 감정평가 의뢰(1건), 지적측량(1건)
 - 2024. 1. ~ 12. : 감정평가 의뢰(5건), 지적측량(2건)
 - 2025. 1. ~ 12. :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이용실태조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 1월 ~ 12월 : 감정평가 의뢰(1건), 지적측량(1건)
2024	○ 2024. 1월 ~ 12월 : 감정평가 의뢰(5건), 지적측량(2건) / 부과 4건 (이행강제금 부과액 639,438천원)
2025	○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정기조사대상 15,776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000	4,446	-	21,554	
2024	56,000	15,233	-	40,767	
2025	56,000	-	-	56,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8급 김보석	전화	4267
-----	-------	------------	-----	----------	----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기간	2025. 3.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소재 농지
사업규모	3,261ha(35,666필지)		
사업목적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8,939	146,184	82,130	0	21,686	43,850	-1,482	47,245	
국비	69,257	91,542	57,491		7,509	27,470	-928	22,285	
도비		0						0	
시비	29,682	54,642	24,639		14,177	16,380	-554	24,9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82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 경정(91,200원*22명*43.9일) - 기정(91,200원*22명*43.5일) = 599 ·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보조원 인건비 : 경정(91,200원*8명*73.9일) - 기정(91,200원*8명*74.6일) = -546		
	201-02 공공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 : 경정(617,000원*7개소) - 기정(836,000원*7개소) = -1,535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전용 여부 조사를 위한 이용실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농지정보의 DB자료 및 필지별 농지대장 현행화 연중 추진을 위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예산증감 사유

-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4차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 농지대장 정비계획 수립
 - 2025. 4. ~ 12. : 농지대장 정비 및 현장조사
 - 2025. 7. ~ :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5. 8. ~ :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등록 및 확정
 - 2025. 9. ~ 11. :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록
 - 2026. 2. ~ 3. :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20,104필지)
2024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18,766필지)
2025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19,284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9,263	82,324	-	6,939	
2024	98,939	93,570	-	5,369	
2025	147,666	51,625	-	96,04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8급 김보석	전화	4267
-----	-------	------------	-----	----------	----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어업인 9,679명		
사업목적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삶의 질 향상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7,097,500	7,317,300	-30,000	0	0	-189,800	7,097,500	
국비		0						0	
도비		3,548,750	3,658,650	-15,000			-94,900	3,548,750	
시비		3,548,750	3,658,650	-15,000			-94,900	3,548,7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9,800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 경정[(일반농어민 600,000원*8,760명)+(청년,귀농,환경농어민 1,800,000원*919명)] - 기정[(일반농어민 600,000원*7,363명)+(청년,귀농,환경농어민 1,800,000원*1,490명)]	= -189,8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 고령화, 지역 소멸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특정 농어민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재생 및 발전 기여
- 김포시 농업인 9,679명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매칭 사업 추진에 따른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
- 농어민기회소득 2차 신청자 일반농어민 증가 및 청년·귀농·환경·농어민 감소로 예산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홍보
- 2025. 3. ~ 4. :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접수
- 2025. 5. : 1차 지급요건 확인(위원회 운영)
- 2025. 6. : 1차 지급
- 2025. 9. ~ 10. :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 2025. 11. : 2차 지급요건 확인(위원회 운영)
- 2025. 12 : 2차 지급 및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소요액 : 3,040,199천원 ·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수당,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및 기회소득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287,300	3,040,199	-	4,247,1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 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20	60	120	0	0	0	-60	-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0	60	120				-60	-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이자 차액 보전금 : 경정(15,000원*1명*4분기)-기정(30,000원*1명*4분기) =	-60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안정화

□ 예산증감 사유

-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이자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분기별 이자차액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1~4분기 147천원 지급
2024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1~4분기 104천원 지급
2025	○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 1~3분기 46천원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	147	-	853	
2024	120	104	-	16	
2025	120	46	-	7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7급 소민정	전화	4254
-----	-------	------------	-----	----------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가
사업규모	3,605ha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532,000	8,814,300	9,772,000	0	0	0	-957,700	282,300	
국비	8,532,000	8,814,300	9,772,000				-957,700	282,3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57,700	
기본형 공익직불제	301-14 기타보상금	· 기본형 공익직불제 : 경정(8,814,300천원)-기정(9,772,000천원)	-957,700	
		· 사업량 : 3,605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 논·밭, 진흥·비진흥 등에 따라 면적 구간별 지급 (단위 : 만원/ha) ㉞		
구분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	215	207	198	
논 비진흥	187	179	170	
밭 비진흥	150	143	136	

□ 예산요구 사유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3,890ha → 3,605ha)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02. : 지침수립 및 사전검증
 - 2025. 03. ~ 05. : 신청·등록
 - 2025. 06. : 등록증 발급
 - 2025. 07. ~ 10. : 신청인 자격 대량검증 및 등록 대상자 확정
 - 2025. 11. ~ 12. : 직불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942농가 / 3,806ha / 8,367,548천원
2024	· 5,975농가 / 3,690.7ha / 8,285,174천원
2025	· 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590,866	8,367,548	-	223,318	
2024	8,532,000	8,285,174	-	246,826	
2025	9,772,000	-	-	9,77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80.4ha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7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5,780	63,531	59,719	0	0	0	3,812	27,751	
국비	35,780	63,531	59,719				3,812	27,751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812																				
친환경농업직불	301-14 기타보상금	· 친환경농업직불 : 경정(63,531,000원)-기정(59,719,000원) · 지급한도 : 0.1 ~ 30.0 ha/농가 ·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 3,812																				
		<table><tr><th rowspan="2">인증단계</th><th>논</th><th colspan="2">밭</th></tr><tr><th>벼·연근·미나리</th><th>과수</th><th>채소·특작·기타</th></tr><tr><td>유기</td><td>700</td><td>1,400</td><td>1,300</td></tr><tr><td>무농약</td><td>500</td><td>1,200</td><td>1,100</td></tr><tr><td>유기지속</td><td>350</td><td>700</td><td>650</td></tr></table>			인증단계	논	밭		벼·연근·미나리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인증단계				논	밭																
					벼·연근·미나리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지원																							
※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 대해 유기지속직불금(50%) 기한없이 지속 지급																							

□ 예산요구 사유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04. : 신청 및 접수
 - 2025. 05.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05. ~ 10. : 이행점검
 - 2025. 11. ~ 12. : 직불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62농가 / 48.7ha / 27,160천원
2024	· 78농가 / 58.2ha / 34,779천원
2025	· 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872	27,160	-	1,712	
2024	35,780	34,779	-	1,001	
2025	59,719	-	-	59,71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월곶면, 하성면
사업규모	1,753톤		
사업목적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지법		제21조 제2항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18,715	487,692	429,972	22,151	0	0	35,569	268,977	
국비	133,221	313,482	261,768	16,145	0	0	35,569	180,261	
도비	42,747	87,105	84,102	3,003	0	0	0	44,358	
시비	42,747	87,105	84,102	3,003	0	0	0	44,358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5,569	
토양개량제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경정(토양개량제 : 278천원 * 1,753톤)- 기정(토양개량제 : 261천원 * 1,732톤) ※ 토양개량제 단가 : 규산 175천원/톤, 석회고토 191천원/톤, 패화석 142천원/톤 규산 공동살포비 : 국비 500원/20kg, 도비 250원/20kg, 시비 450원/20kg	35,569	

□ 예산요구 사유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으로 지력 유지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 및 밭 토양의 산도를 높임으로써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내시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2. : 2025년 토양개량제 추가신청 및 선정
 - 2025. 1 ~ 2025. 2. :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규산)실시
 - 2025. 3. ~ 4.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25. 5. ~ 10. : 토양개량제 살포 현황 점검
 - 2025. 11.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급량 : 608톤(고촌, 양촌, 동지역) - 지급금액 : 134,618천원
2024	- 공급량 : 945톤(대곶, 통진) - 지급금액 : 200,947천원
2025	- 공급량 : 1,729톤(월곶, 하성) - 지급금액 : 383,781천원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987	134,618	-	2,369	
2024	218,715	200,947	-	17,768	
2025	452,123	383,781	-	68,34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9급 김대곤	전화	4285
-----	-------	------------	-----	----------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6,988개소(농업인안전보험 5,826개소, 농기계종합보험 1,162개소)		
사업목적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90,060	369,613	419,613	0	0	0	-50,000	79,553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87,018	110,884	125,884	0	0	0	-15,000	23,866	
시비	203,042	258,729	293,729	0	0	0	-35,000	55,687	
기타	96,686	199,022	225,945	0	0	0	-26,923	102,33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농업인안전 재해보험	307-06 보험금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경정(농업인안전보험 236,323천원+농기계종합보험 133,290천원) -기정(농업인안전보험 286,323천원+농기계종합보험 133,290천원) · 보험료 : 유형별 최종 보험료 상이 - 보조비율 : 도비 9.75%, 도비 22.75%, 자부담 17.5% ※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	-50,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기여
-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로 사회안전망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홍보 및 사업비 지급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사업량 : 6,404건(농업인안전보험 5,199건, 농기계종합보험 1,205건) · 집행액 : 336,304천원(농업인안전보험 201,241천원, 농기계종합보험 135,063천원)
2024	· 사업량 : 5,403건(농업인안전보험 4,191건, 농기계종합보험 1,212건) · 집행액 : 289,967천원(농업인안전보험 159,771천원, 농기계종합보험 130,196천원)
2025	· 사업량 : 6,672건(농업인안전보험 5,429건, 농기계종합보험 1,243건) · 집행액 : 293,802천원(농업인안전보험 173,054천원, 농기계종합보험 120,748천원)/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2,611	336,304	-	6,307	
2024	290,060	289,967	-	93	
2025	419,613	293,802	-	125,81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전략작물직불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가
사업규모	92.8ha		
사업목적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82,000	264,000	310,000	0	0	0	-46,000	182,000	
국비	82,000	264,000	310,000				-46,000	182,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6,000																						
전략 작물직불금	301-14 기타보상금	· 전략작물직불금 : 경정(264,000,000원)-기정(310,000,000원) · 품목별 지급 단가			≒ -46,000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품 목</th><th>지원단가</th></tr><tr><td rowspan="5">단 작</td><td rowspan="2">동계</td><td>밀</td><td>100원/㎡</td></tr><tr><td>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td><td>50원/㎡</td></tr><tr><td rowspan="3">하계</td><td>가루쌀, 두류</td><td>200원/㎡</td></tr><tr><td>옥수수</td><td>100원/㎡</td></tr><tr><td>조사료</td><td>500원/㎡</td></tr><tr><td>이 모 작</td><td>인센티브 혜택 (해당 작물 이모작 시)</td><td>동계 밀 · 조사료 + 하계 두류 · 가루쌀</td><td>100원/㎡ 추가 지급</td></tr></table>					구 분		품 목	지원단가	단 작	동계	밀	100원/㎡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50원/㎡	하계	가루쌀, 두류	200원/㎡	옥수수	100원/㎡	조사료	500원/㎡	이 모 작	인센티브 혜택 (해당 작물 이모작 시)	동계 밀 · 조사료 + 하계 두류 · 가루쌀	100원/㎡ 추가 지급
		구 분		품 목			지원단가																				
		단 작	동계	밀			100원/㎡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50원/㎡																				
			하계	가루쌀, 두류			200원/㎡																				
				옥수수			100원/㎡																				
				조사료			500원/㎡																				
		이 모 작	인센티브 혜택 (해당 작물 이모작 시)	동계 밀 · 조사료 + 하계 두류 · 가루쌀			100원/㎡ 추가 지급																				

□ 예산요구 사유

-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조정 필요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실제 신청 품목 지원 단가에 맞게 예산 조정 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05. : 신청 및 접수
 - 2025. 04.(동계) / 07.(하계) : 전략작물직불금 위원회 심의
 - 2025. 04. ~ 06.(동계) / 07.~10.(하계) : 이행점검
 - 2025. 07.(동계) / 10.~11.(하계) : 지급대상자 검증 및 확정
 - 2025. 08.(동계) / 12.(하계) : 직불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6농가 / 20.1ha / 25,237천원
2024	· 62농가 / 32.8ha / 65,591천원
2025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000	25,237	-	7,763	
2024	82,000	65,591	-	16,409	
2025	310,000	-	-	31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가
사업규모	250.3ha		
사업목적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9,000	77,000	0	0	0	-8,000	69,000	
국비		69,000	77,000				-8,000	69,0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301-14 기타보상금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 경정(69,000,000원)-기정(77,000,000원)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 250.3ha · 지급단가 - 중간 물떼기 : 15만원/ha - 논물 얹게 걸러대기 :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등 : 36.4만원/ha - 가을갈이 : 46만원/ha	-8,000	

□ 예산요구 사유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호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이행점검에 따른 사업량 (300ha → 250ha)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02. : 신청 및 접수
 - 2025. 03.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
 - 2025. 03. ~ 11. : 활동이행 및 이행점검
 - 2025. 11. ~ 12. : 활동비 산정 및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사업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77,000	-	-	77,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9급 박지애	전화	4279
-----	-------	------------	-----	----------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711ha		
사업목적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비용부담 및 경영불안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65,350	283,553	371,254	0	-30,982	0	-56,719	-81,797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73,070	85,066	111,376	0	-9,294	0	-17,016	11,996	
시비	292,280	198,487	259,878	0	-21,688	0	-39,703	-93,793	
기타	91,338	70,888	92,814	0	-7,746	0	-14,180	-20,45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6,71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307-06 보험금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 경정(283,553천원)-기정(340,272천원) · 보험료 : 품목, 면적, 개인 할인을 등에 따라 최종 보험료 상이 - 보조비율 : 도비 12%, 도비 28%, 자부담 10% ※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	= -56,719	

□ 예산요구 사유

-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보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사업홍보 및 사업비 지급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699농가 · 집행액 : 516,100천원
2024	· 사업량 : 653농가 · 집행액 : 363,558천원
2025	· 사업량 : 722농가 · 집행액 : 215,942천원/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16,100	516,100	-	-	
2024	365,350	363,558	-	1,792	
2025	340,272	215,942	-	124,3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24.11월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농지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대설 피해 농업인의 철거비 지원으로 조속한 영농 복귀 및 경영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제1항, 제3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6,606	0	8,340	0	0	-1,734	6,606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3,303	0	4,170	0	0	-867	3,303	
시비	0	3,303	0	4,170	0	0	-867	3,303	
기타	0	6,606	0	8,340	0	0	-1,734	6,60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34	
‘24.11월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 철거비 : 경정(6,606천원)-기정(8,340천원) - 과수재배시설 철거비 지급단가 : 4,170원/㎡	= -1,734	

□ 예산요구 사유

- ‘24.11월 대설 인하여 과수재배시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복귀와 피해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철거비 일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04. : 신청 및 접수
 - 2025. 04. ~ 2025. 12. : 현장확인 및 철거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사업량 : 3개소 · 집행액 : 6,60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340	6,605	-	1,73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김포금쌀 등 급식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사업규모	5,384포/10kg		
사업목적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김포금쌀 공급지원 및 소비촉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8,000	20,000	52,500	0	0	0	-32,500	-8,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8,000	20,000	52,500				-32,500	-8,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500	
김포금쌀 등 급식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금쌀 안전성 검사 : 경정(0원)-기정(312,500원*4개소*2회) =	-2,500	
	301-14 기타보상금	· 급식쌀 차액 : 경정(9,340원*2,141포)-기정(10,400원*4,807포)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에 김포금쌀 공급을 통한 공공급식 지원 및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 도모
-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 공급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매칭 사업(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서 쌀 안전성 검사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전액 삭감
- 도비 매칭 사업 추경 증액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물량 예산 부담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추진계획 수립
 - 2025. 02. : 쌀 급식 공급계약 체결
 - 2025. 01. ~ 12. : 공공급식 급식지원 및 월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급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어린이집 272개소 · 공급실적 : 38.8톤
2024	· 공급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어린이집 292개소 · 공급실적 : 29.6톤
2025	· 공급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1개소, 어린이집 292개소 · 공급실적 : 8.2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0,100	47,308	-	12,792	
2024	28,000	27,726	-	274	
2025	52,500	10,953	-	41,54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김포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먹거리 위원회(20명)		
사업목적	김포시 먹거리 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9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의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김포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0	3,000	0	0	0	-3,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3,000				-3,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김포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경정(0원)-기정(100,000원*15명*2회)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 김포시 먹거리 관련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적 의제 발굴 등 민관거버넌스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당해 먹거리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00	-	-	1,600	
2024	-	-	-	-	
2025	3,000	-	-	3,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4,987명		
사업목적	제철 과일간식 공급으로 건강한 식습관 배양 및 과일소비 확대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9호, 10호
	도지사는 과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과일 생산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소득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135,260	962,000	1,140,000	0	0	0	-178,000	-173,26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567,630	481,000	570,000	0	0	0	-89,000	-86,630	
시비	567,630	481,000	570,000	0	0	0	-89,000	-86,63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8,000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경정(962,000천원)-기정(1,140,000천원)	= -178,000	

□ 예산요구 사유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어린이에 주 1~2회 제철과일 공급(가정보육어린이는 해당액 상당 가정 배송) 지원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
- 도내산 과일 소비 확대로 과수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과일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5.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사 업 량 : 17,348명[428개소(13,156명)/4,192명] · 집 행 액 : 1,092,862천원 · 지원내역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그룹홈 이용 어린이 및 가정보육어린이에 과일공급
2024	· 사 업 량 : 15,426명[388개소(11,652명)/3,774명] · 집 행 액 : 1,095,739천원 · 지원내역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그룹홈 이용 어린이 및 가정보육어린이에 과일공급
2025	· 사 업 량 : 380개소(12,493명)/가정보육어린이 추진 중 · 집 행 액 : 869,986천원 · 지원내역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그룹홈 이용 어린이 및 가정보육어린이에 과일공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35,260	1,092,862	-	42,398	
2024	1,135,260	1,095,739	-	39,521	
2025	1,140,000	869,986	-	270,0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업회사법인 2개소		
사업목적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팻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3,629	0	0	0	29,139	4,490	33,629	
국비		11,223				9,713	1,510	11,223	
도비		11,203				9,713	1,490	11,203	
시비		11,203				9,713	1,490	11,203	
기타		78,421				67,991	10,430	78,421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490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2개소) : 경정(56,048,333원*2개소*30%)-기정(48,565,000원*2개소*30%) =	4,490	

□ 예산요구 사유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이전 농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5년부터 지자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액 증가
※ 2025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확정내시(3차) 알림 및 예산 편성 현황 제출 요청
[경기도 농식품유통과-12155(2025.10.0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예산 확보
 - 2025. 12. : 사업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2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9,139	-	-	29,1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 약 62,000명				
사업목적	친환경 우수농산물 및 우수경기미 공급에 따른 학교급식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지원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277,000	3,209,288	2,960,000	0	0	0	249,288	-67,712	
국비		0						0	
도비	1,638,500	1,604,644	1,480,000				124,644	-33,856	
시비	1,638,500	1,604,644	1,480,000				124,644	-33,85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9,288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친환경 농산물 및 김포금쌀 지원 : 경정(3,209,288,000원) - 기정(2,960,000,000원)	= 249,288	

□ 예산요구 사유

- 차액지원을 통한 친환경, G마크 등의 인증을 받은 우수경기미 및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고품질의 학교급식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8531(2025. 10. 21.)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25년 우수경기미 공급가 및 공급업체 확정에 따른 계약 안내
 - 2025. 1. ~ 12. : 우수농산물·우수경기미 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5.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학교 : 86개교 · 공급물량 : 1,659톤 (농산물 1,081톤 / 쌀 578톤)
2024	· 지원학교 : 87개교 · 공급물량 : 1,706톤 (농산물 1,101톤 / 쌀 605톤)
2025	· 지원학교 : 90개교 · 공급물량 : 1,233톤 (농산물 796톤 / 쌀 437톤)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121,000	2,947,628	-	173,372	
2024	3,277,000	3,236,293	-	40,707	
2025	2,960,000	2,211,986	-	748,01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90개교 약 62,000명		
사업목적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우수축산물 공급으로 급식 품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제8조(경비부담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제5조(지원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20,000	980,000	1,030,000	0	0	0	-50,000	60,000	
국비		0						0	
도비	460,000	490,000	515,000				-25,000	30,000	
시비	460,000	490,000	515,000				-25,000	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 경정(980,000,000원) - 기정(1,030,000,000원)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G마크 축산물 축종별 단가 지원으로 관내 학교에서 우수축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적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상·하반기 축종별 축산물 보조금 단가 변경으로 예산 감액
 - '25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
-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8055(2025. 10. 1.)호 및 -8618(2025. 10. 2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5. 1. ~ 12. :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5.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학교 : 86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425,926kg
2024	· 지원학교 : 87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434,044kg
2025	· 지원학교 : 90개교 · 공급물량 : 축산물 352,966kg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40,000	788,079	-	51,921	
2024	920,000	920,000	-	-	
2025	1,030,000	763,261	-	266,73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학교
사업규모	관내 취약계층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465명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낙농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7.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44,500	416,580	320,650	0	0	0	95,930	72,080	
국비	206,700	249,948	192,390				57,558	43,248	
도비	41,340	0						-41,340	
시비	96,460	166,632	128,260				38,372	70,17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5,930	
학교우유급식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학교우유급식 : 경정(416,580,000원) - 기정(320,650,000원) =	95,930	

□ 예산요구 사유

- 우유소비기반 확대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종료 후 '25년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예산 증액
- '25년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경기도 축산정책과-11543(2025. 7. 1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학교우유급식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5. 1. ~ 12. : 우유공급 및 사업비 집행
 - 2025.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집행액 : 학교우유급식지원(90,815,600원)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245,000,000원) · 추진량 : 학교우유급식지원(1~2월: 86개교-2,984명, 3~12월: 1개교-약 215명)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약 2,000명)
2024	· 집행액 : 학교우유급식지원(30,075,660원)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300,000,000원) · 추진량 : 학교우유급식지원(1개교-약 217명)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약 2,100명)
2025	· 집행액 : 학교우유급식지원(38,701,030원)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종료 · 추진량 : 학교우유급식지원(83개교-약 2,508명)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8,200	335,816	-	52,384	
2024	344,500	330,076	-	14,424	
2025	320,650	38,701	-	281,94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90
-----	-------	--------------	-----	------------	----	------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7.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및 공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시설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유통망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비닐하우스·농자재 등 생산시설 지원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적절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저온시설·저온차량 등 시설의 설치·개보수 등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8,000	42,000	42,000	0	0	0	0	42,000	
국비		0							
도비	9,000	21,000	21,000					21,000	
시비	9,000	21,000	21,000					21,000	
기타	12,000	28,000	28,00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2,000	
접경지역 군납 시설 구축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냉동탑차(3.5t) = 70,000천원 * 1대 * 60% = 42,000	42,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군납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생산 출하량 조절 등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계획이 당초 저온저장고 보완공사에서 군납농산물 물류용 냉동탑차(3.5t) 구입으로 변경되면서 차량 출고 및 특장차 제작까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불가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사업계획 수립
 - 2025. 3.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9. : 사업계획 변경
 - 2025. 10. : 물품구입 입찰 대행 의뢰(진행중)
 - 2025. 11. : 물품계약
 - 2026. 7.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군납생산농가 2개소 · 지원내역 : 저온창고 1개소, 비닐하우스 4동
2024	· 지원대상: 군납조합 1개소 · 지원내역 : 지게차 1대
2025	· 지원대상: 군납조합 1개소 · 지원내역 : 냉동탑차 1대(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820	13,635	-	31,185	
2024	18,000	18,000	-	-	
2025	42,000	-	-	42,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7급 유현정	전화	4282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축산과



(축산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축산과
기 정 액	5,330,702천원	요 구 액	1,026,13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611	19	0	0	19	-592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4년 하반기 신용카드 이자수입 ◎'25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자수입	611	19	0	0	19	-592	24년 하반기 신용카드 이자수입 10천원 25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자수입 9천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500	55,530	0	0	55,530	46,030	
과징금/과징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0	47,040	0	0	47,040	47,040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47,040천원
과태료/기타과태료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이력법 위반 과태료 ◎약사법 위반 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9,500	8,490	0	0	8,490	-1,010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800천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800천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318천원 축산물이력법 위반 과태료 1,454천원 약사법 위반 과태료 600천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1,656천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친환경사료(젖소 155두, 산란계 286,014두), 분뇨처리개선(한육우 180두, 젖소 214두)		
사업목적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905	39,877	0	0	0	69,589	-29,712	38,972	
국비	905	39,877	0	0	0	69,589	-29,712	38,972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712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301-14 기타보상금	· 저탄소 증빙활동 이행비 : 경정(39,877,000원)-기정(69,589,000원) =	-29,712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및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내시 및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증빙 실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친환경 사료(젖소 160두/산란계 293,450수 → 젖소 155두/산란계 286,014수)
 - 분뇨처리 개선(한육우 208두 → 180두)
 - 신청농가: 10농가 / 저탄소 증빙 이행 농가: 5농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2025. 03. : 저탄소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 05.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05. ~ 2025. 10. : 활동 이행 및 점검
 - 2025. 11. ~ 2025. 12. : 지급액 산정 및 지급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5개 농가 저탄소 증빙활동 이행중 [친환경 사료(젖소 155두, 산란계 286,014수), 분뇨처리개선(한육우 180두, 젖소 214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905	-	905	-	
2025	70,494	-	-	70,49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사회적 배려 유·청소년 낙농체험 지원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낙농체험목장
사업규모	5회		
사업목적	사회적 배려대상 유·청소년의 낙농체험을 통한 심신안정 및 낙농체험 목장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신소득 창출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880	0	0	11,760	0	-5,880	5,88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0	2,940	0	0	5,880	0	-2,940	2,940	
시비	0	2,940	0	0	5,880	0	-2,940	2,94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880	
사회적 배려 유·청소년 낙농체험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낙농체험 비용 지원 : 경정(5,880,000원)-기정(11,760,000원)	= -5,88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적 배려대상 유·청소년의 낙농체험을 통한 심신안정 및 자신감 고취
- 낙농체험 목장 활성화를 통한 농가 신소득 창출 및 경영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업량 : 10회 → 5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8. : 체험 목장 및 체험 대상자 선정
 - 2025.08.~2025.11. : 낙농체험 실시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및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체험대상 목장 : 2개소(꿈목장, 연보람목장) · 체험대상 단체 : 2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1,760	-	-	11,7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살처분보상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가축질병(구제역·AI·ASF·럼피스킨·결핵·브루셀라 등) 발생 시 지급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911,650	1,024,489	2,000,000	0	0	0	-975,511	-887,161	
국비	1,321,600	819,591	1,600,000	0	0	0	-780,409	-502,009	
도비	165,200	102,449	200,000	0	0	0	-97,551	-62,751	
시비	424,850	102,449	200,000	0	0	0	-97,551	-322,401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75,511	
살처분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 가축전염병 등 감염축 살처분 보상 :경정(1,024,489,000원)-기정(2,000,000,000원) * 농가별 축종별 연령별 시세, 두수 등에 따라 보상액 상이	= -975,511	

□ 예산요구 사유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등 살처분 보상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평년대비 김포시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른 감액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가축질병 발생 관련 살처분보상
 - 2025. 12. : 사업 마감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AI 발생농가 1개소, ASF 발생농가 2개소 살처분보상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1개소 보상
2024	· ASF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2개소 · 렘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4개소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5개소 보상
2025	· ASF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1개소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보상 1개소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2개소 보상 · 구제역 및 렘피스킨 접촉 후 유사산, 폐사 개체 보상 9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26,671	3,589,821	2,336,850	-	
2024	4,850,250	4,850,250	-	-	
2025	2,000,000	844,274	-	1,155,7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3
-----	-----	------------	-----	----------------------	----	--------------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사업기간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소독약 2,400kg, 공수의사 동원 125두분, 질병검진 채혈 1,000두분		
사업목적	동절기 유행 가축전염병(고병원성AI, ASF, 브루셀라 등) 유입 및 확산 차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80,000	0	0	0	0	80,000	80,00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80,000	0	0	0	0	80,000	80,000	
시비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206-01 재료비	· 가축 방역약품 구입 : 경정(25,000원 × 2,400kg) - 기정(0원) =	60,000	
	301-14 기타보상금	· 공수의사 동원 : 경정(80,000원 × 125두) - 기정(0원) =	10,000	
		· 질병검진 채혈 : 경정(10,000원 × 1,000두) - 기정(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전국 고병원성AI, ASF,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유행에 따른 김포시 질병 청정화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 및 공수의사 검사 등 동원비용 수립

□ 예산증감 사유

- 전국 고병원성AI, ASF,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지역 간 전파 차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되어 예산사용을 위한 추경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방역약품 구입·사용, 질병검진 채혈 및 공수의사 현장동원
 - 2025. 12. : 사업 마감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해당없음(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3
-----	-----	------------	-----	----------------------	----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실외사육견(마당개)
사업규모	125마리		
사업목적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37,800	45,000	39,600	0	0	0	5,400	7,200	
국비	8,400	10,000	8,800	0	0	0	1,200	1,600	
도비	0	0	0	0	0	0	0	0	
시비	29,400	35,000	30,800	0	0	0	4,200	5,600	
기타	4,200	5,000	4,400	0	0	0	600	8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00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도비 : 경정(10,000,000원)-기정(8,800,000원)	= 1,200	
		· 시비 : 경정(35,000,000원)-기정(30,800,000원)	= 4,2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지역 내 실외사육견 및 사설 동물보호소의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제반 비용
- 유기견과 실외사육견 간의 번식 방지를 위한 중성화수술 실시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조기 완료로 사업량 추가 확보에 따른 증액 [증 15마리(110마리 → 125마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추진계획 수립
 - 2025. 01. ~ 2025. 02. : 중성화 시행위탁 동물병원 공고 및 선정
 - 2025. 01. ~ 2025. 12. : 읍·면·동 홍보, 접수 및 사업 추진(연중 계속)
 - 2025. 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2023	· 중성화 지원 116마리(암 88, 수 28) / 35,235천원(잔액 765천원)
2024	· 중성화 지원 125마리(암 98, 수 27) / 37,800천원(잔액 0원)
2025	· 중성화 지원 132마리(암 96, 수 36) / 39,510천원(잔액 9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	35,235	-	765	
2024	37,800	37,800	-	-	
2025	39,600	39,510	-	9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5개소		
사업목적	개식육농가 폐업 지원을 통한 개식용 조기 종식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5,103,120	0	0	1,503,120	0	3,600,000	5,103,120	
국비	0	2,551,560	0	0	751,560	0	1,800,000	2,551,560	
도비	0	225,468	0	0	225,468	0	0	225,468	
시비	0	2,326,092	0	0	526,092	0	1,800,000	2,326,092	
기타	0	0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00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개사육농가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 - 경정(42,000,000원) - 기정(12,000,000원)	= 30,000	
	301-14 기타보상금	· 1구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6개소) - 경정(1,662,600,000원) - 기정(1,408,680,000원) · 2구간 폐업 농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0%(15개소) : 525,000원*6,450두*50% · 2구간 폐업 농가 자진철거 실비 지급 : 410,101,000원	= 253,920 = 1,693,125 = 410,101	
	401-01 시설비	· 개 사육 농가 시설물 철거비 - 경정(337,491,000원) - 기정(82,440,000원) · 1구간 폐업 농가 시설물 잔존가액(6개소) : 957,803,000원	= 255,051 = 957,803	

□ 예산요구 사유

-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을 통한 개식용 조기 종식 도모
- 폐업 및 전업 개사육농가 대상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철거 대행 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2025. 10. : 개 사육 농가 25개소 중 21개소 폐업 완료
 - 2025. 02. ~ 2025. 12.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감정평가 실시, 철거 등 농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 831,300천원(1구간 6개소) · 시설물 등 잔존가액 평가 실시 : 2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503,120	831,300	-	671,8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7급 황재하	전화	4324
-----	-----	------------	-----	----------	----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3. ~ 2026. 3.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296명		
사업목적	산모의 건강회복 및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출산장려, 축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한 축산물 지원으로 축산물 소비 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제5호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18,000	229,600	229,600	0	0	0	0	29,600	
국비	0	0	0	0	0	0	0	0	
도비	59,000	114,800	114,800	0	0	0	0	14,800	
시비	59,000	114,800	114,800	0	0	0	0	14,800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9,600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100,000원*296명 =	29,6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출산한 산모에게 10만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회복 및 고물가에 위축된 축산물 소비 촉진 도모
- 11~12월 신청자 수요를 예측하여 집행 예정이나, 추가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명시이월 필요
- 12월까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신청 예상(2,000명)으로 예상 집행 잔액분에 대하여 명시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공급업체 지정 및 계약
 - 2025. 02.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25. 03. ~ 2026. 2. : 사업추진
 - 2026. 3.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지원내역 : 1,885명 - 집행액 : 109,200천원
2025	- 지원내역 : 1,622명 - 집행액 : 137,7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18,000	109,200	8,800	0	
2025	238,400	137,700	-	100,7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살처분보상금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6. 3.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가축질병(구제역·AI·ASF·럼피스킨·결핵·브루셀라 등) 발생 시 지급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록,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 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911,650	1,024,489	2,000,000	0	0	0	-975,511	170,191	
국비	1,321,600	819,591	1,600,000	0	0	0	-780,409	136,153	
도비	165,200	102,449	200,000	0	0	0	-97,551	17,019	
시비	424,850	102,449	200,000	0	0	0	-97,551	17,019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70,191	
살처분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 가축전염병 등 감염축 살처분 보상 * 농가별 축종별 연령별 시세, 두수 등에 따라 보상액 상이	= 170,191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살처분보상금 산정 및 확인·검증, 지급기준 결정 등 보상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상금 집행이 차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5. 12.: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및 평가 완료
 - 2026. 01. ~ 2026. 03.: 살처분보상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AI 발생농가 1개소, ASF 발생농가 2개소 살처분보상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1개소 보상
2024	· ASF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2개소 ·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4개소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5개소 보상
2025	· ASF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1개소 ·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보상 1개소 · ASF 역학관련 지육폐기 2개소 보상 · 구제역 및 럼피스킨 접종 후 유사산, 폐사 개체 보상 1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926,671	3,589,821	2,336,850	-	
2024	4,850,250	4,850,250	-	-	
2025	2,000,000	844,274	-	1,155,7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3
-----	-----	------------	-----	----------------------	----	--------------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2. ~ 2026. 3.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공수의사 동원 125두분, 질병검진 채혈 1,000두분		
사업목적	동절기 유행 가축전염병(고병원성AI, ASF, 브루셀라 등) 유입 및 확산 차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80,000	0	0	0	0	80,000	20,000	
국비		0							
도비		80,000					80,000	20,000	
시비		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301-14 기타보상금	· 공수의사 동원 : 80,000원 * 125두 · 질병검진 채혈 : 10,000원 * 1,000두	= 10,000 = 1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신규질병(개 브루셀라병) 발생에 대한 검진, 수의사 동원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되었으나, 검진일정이 연내 사업기간 이후까지 연장 예상되어 이월사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 03. : 브루셀라 검진 및 수의사 방역 동원
 - 2026. 03.: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해당없음(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3
-----	-----	------------	-----	----------------------	----	--------------

개 사육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 ~ 2027. 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5개소		
사업목적	개식육농가 폐업 지원을 통한 개식육 조기 종식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의 식육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육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5,103,120	0	0	1,503,120	0	3,600,000	4,271,820	
국비	0	2,551,560	0	0	751,560	0	1,800,000	2,135,910	
도비	0	225,468	0	0	225,468	0	0	100,773	
시비	0	2,326,092	0	0	526,092	0	1,800,000	2,035,137	
기타	0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271,820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개사육농가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 : 2,000,000원*21개소 =	42,000	
	301-14 기타보상금	· 폐업 농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21개소) : 2,524,425,000원 = · 2구간 폐업 농가 자진철거 실비 지급 : 410,101,000원 =	2,524,425 410,101	
	401-01 시설비	· 개 사육농가 시설물 철거비 : 337,491,000원 = · 1구간 폐업 농가 시설물 잔존가액(6개소) : 957,803,000원 =	337,491 957,803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개 사육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에 따른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시설물 잔존가액은 시설물 철거 후 지급 가능
- 농가의 개수 및 규모 등으로 인해 연내 철거 작업 완료가 지난함에 따라 관련 예산 명시이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 2025. 10. : 개 사육 농가 25개소 중 21개소 폐업 완료

- 2025. 2. ~ 2025. 12.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감정평가 실시, 철거 등 농가 지원

- 2026. 1. ~ 2026. 12. : 잔여 개사육 농가(4개소) 지원신청서 접수 및 농가 지원 지속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 831,300천원(1구간 6개소) · 시설물 등 잔존가액 평가 실시 : 2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503,120	831,300	-	671,82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7급 황재하	전화	4324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농업진흥과
기 정 액	537,217천원	요 구 액	-52,056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경상적세외수입	70,013	72,506	140,016	0	-67,510	2,493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70,000	72,000	70,000	0	2,000	2,000	농기계 임대 건수 증대에 따른 증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3	6	3	0	3	3	이중 편성 항목 통합으로 인한 증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농기계임대사용료	0	0	70,000	0	-70,000	0	이중 편성 건으로 인한 삭제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시범사업 이자	10	500	10	0	490	490	시범사업 이자액 발생에 따른 증액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신용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0	0	3	0	-3	0	이중 편성 건으로 인한 삭제
임시적세외수입	10,100	22,732	10,100	0	12,632	12,632	
재산매각수입/불용품매각대금 ◎불용품 매각대금	10,000	20,000	10,000	0	10,000	10,000	노후농기계 판매 일정 추가로 인한 증액
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 부가세	0	2,272	0	0	2,272	2,272	시범사업 부가세 발생에 의한 증액
기타수입/그외수입 ◎농산물가공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환급금	100	400	100	0	300	300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에 따른 증액
기타수입/그외수입 ◎농업진흥과 관용차량 사고로 인한 휴차료 부과	0	60	0	0	60	60	관용차량 휴차료 세입을 위한 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보전수입등	0	2,822	0	0	2,822	2,822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조 상품화 시범사업 이자	0	502	0	0	502	502	국비사업 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 이자	0	7	0	0	7	7	도비사업 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시범사업 부가세	0	2,272	0	0	2,272	2,272	도비사업 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 이자	0	5	0	0	5	5	도비사업 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시영치유타발 운영 사업 이자	0	8	0	0	8	8	도비사업 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 이자	0	5	0	0	5	5	도비사업 이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농촌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 이자	0	23	0	0	23	23	도비사업 이자 반납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기술지원과



벼 병해충 방제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관내 벼 재배지역
사업규모	4,147ha		
사업목적	벼 병해충의 예찰 및 일시·다면적 예방적 공동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지원)시장은 제5조제3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예산 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56,862	1,765,986	2,054,336	0	0	0	-288,350	109,12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56,862	1,765,986	2,054,336				-288,350	109,12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88,350	
벼 병해충 방제	206-01 재료비	· 벼 병해충 방제용 작물보호제(친환경) : 경정(755,000,000원)-기정(900,000,000원) · 벼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 경정(188,005원*3,960ha*80%)-기정(200,000원*3,960ha*80%)	= -183,000	
	401-01 시설비	· 드론방제 용역비 : 경정(76,294.2원*3,670ha)-기정(105,000원*3,670ha)	= -105,350	

□ 예산증감 사유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기본계획수립
 - 2025. 1 ~ 2 : 벼 병해충 방제면적 산출
 - 2025. 3 ~ 5. : 벼 병해충 방제 약제·용역 입찰 공고 및 계약
 - 2025. 7 ~ 8 : 사업추진
 - 2025. 9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벼 병해충 항공방제 - 사업비 : 2,009,431천원 - 방제면적 : 4,348ha(헬기 2,039, 드론 2,309ha)
2024	• 벼 병해충 항공방제 - 사업비 : 1,112,726천원 - 방제면적 : 4,170ha(드론 100%)
2025	• 벼 병해충 항공방제 - 사업비 : 1,544,000천원 - 방제면적 : 4,142ha(드론 10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29,570	2,528,513	-	1,057	
2024	1,656,862	1,649,332	-	7,530	
2025	2,034,336 20,000천원 예산전용	1,733,728	-	300,60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승현	전화	4363
-----	-------	------------	-----	-----------	----	------

김포 꽃 전시회

사업기간	2025. 1. ~ 5.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1개소(김포시화훼연합회)		
사업목적	김포시 화훼농가 소득 증대 및 화훼산업 활성화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1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0	38,600	39,000	0	0	0	-400	38,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600	39,000				-400	38,600	
기타		4,000	4,000					4,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김포 꽃 전시회	201-01 사무관리비	· 김포 꽃전시회 행사 부서원 경비 : 경정(2,600,000원)-기정(3,000,000원)	= -400	

□ 예산요구 사유

- 꽃 전시회를 통한 김포시 꽃 우수성 홍보 및 관내 화훼 경쟁력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부서원 경비 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14회 김포 꽃 전시회 - 기간 및 장소 : 2023. 4. 28.(금) ~ 4. 30.(일), 3일간/장기동 한강중앙공원(초당로 40) - 참여인원 : 4,000여명 - 판매 및 전시 참여 : 33개소 - 판매실적 : 16,800천원
2024	해당없음
2025	· 제15회 김포 꽃 전시회 - 기간 및 장소 : 2025. 4. 25.(금) ~ 4. 27.(일), 3일간/장기동 한강중앙공원(초당로 40) - 참여인원 : 3,500여명 - 판매 및 전시 참여 : 30개소 - 판매실적 : 19,8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	36,000	-	-	
2024	-	-	-	-	
2025	39,000	38,600	-	4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김수연	전화	4369
-----	-------	------------	-----	-----------	----	------

과수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1개소(관내 과수 재배농가 등)		
사업목적	기후변화(고온, 국지성 호우 등)에 대응하여 신소득 과수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5,000	0	15,000	0	0	0	-15,000	-2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	0	15,000				-15,000	-25,000	
기타	15,000	0	15,000				-15,000	-15,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과수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기후변화 대응 다품종 과수 생산기반 구축 : 경정(0원)-기정(12,000원*2,500㎡*50%)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각종 기후변화(이상고온, 국지성 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김포 지역적응 신소득 과수 품종을 발굴하여 재배 다양성 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 목적

□ 예산증감 사유

- 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기후변화 대응 다품종 과수 생산기반 구축 시범 - 보조사업자 : 변근섭, 문영순 - 추진실적 : 푸른재배 시설 내 무인포그 냉해 방재기 시스템 구축(변근섭) 자두재배지 골조 시설 등 설치(문영순)
2024	○ 기후변화 대응 다품종 과수 생산기반 구축 시범 - 보조사업자 : 한규열 - 추진실적 : 사과 재배기반 구축 등 ○ 김포 샤인머스켓 브랜드화 포장재 디자인 개발 - 추진실적 : 김포 샤인머스켓 브랜드화 포장재 디자인 개발 완료, 상용화 예정
2025	· 사업포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9,996	-	4	
2024	25,000	24,396	-	604	
2025	15,000	-	-	1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장 서이현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규민	전화	4368
-----	-------	------------	-----	-----------	----	------

공원도시사업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공원과



(공원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공원과
기 정 액	1,970,711천원	요 구 액	4,06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0	4,060	0	0	4,060	4,060	
기타수입/그외수입 ◎라베니체 보트하우스 화장실 화재 보험금	0	4,060	0	0	4,060	4,060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공제금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6. 01. : 실시설계 용역
 - 2026. 01. ~ 02.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 2026. 03. ~ 06.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0	-	-	2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공원과	사업규모	인라인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		이월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공원체육시설 종합개선	사업위치	모담공원(운양동), 은샘공원(마산동)			
위치도 및 현장사진	모 담 공 원					
	은 샘 공 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관리2팀장 박종인 공원관리3팀장 안영빈	담당자	행정7급 오윤화 녹지7급 배원준	전화	4627 4643
-----	-----	----------------------------	-----	----------------------	----	--------------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1.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공원 및 녹지
사업규모	생활권 인접 공원 내 맨발걷기길 8개소 조성(총 연장 1.1km)		
사업목적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 체험을 위한 공원녹지 내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임규정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530,000	800,000	0	0	0	800,000	0	8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1,530,000	800,000				800,000		800,000	특조금 560백만원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0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남부권역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 실시설계용역비 : 7,000,000원*4개소 = 28,000 ○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 93,000,000원*4개소 = 372,000 ◎ 중부권역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 실시설계용역비 : 7,000,000원*1개소 = 7,000 ○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 93,000,000원*1개소 = 93,000 ◎ 북부권역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 실시설계용역비 : 7,000,000원*3개소 = 21,000 ○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 93,000,000원*3개소 = 279,000	4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3회 추경 예산으로, 2025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착공 예정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1. ~ 2026. 02.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6. 02. ~ 03.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 2026. 03. ~ 06. : 공사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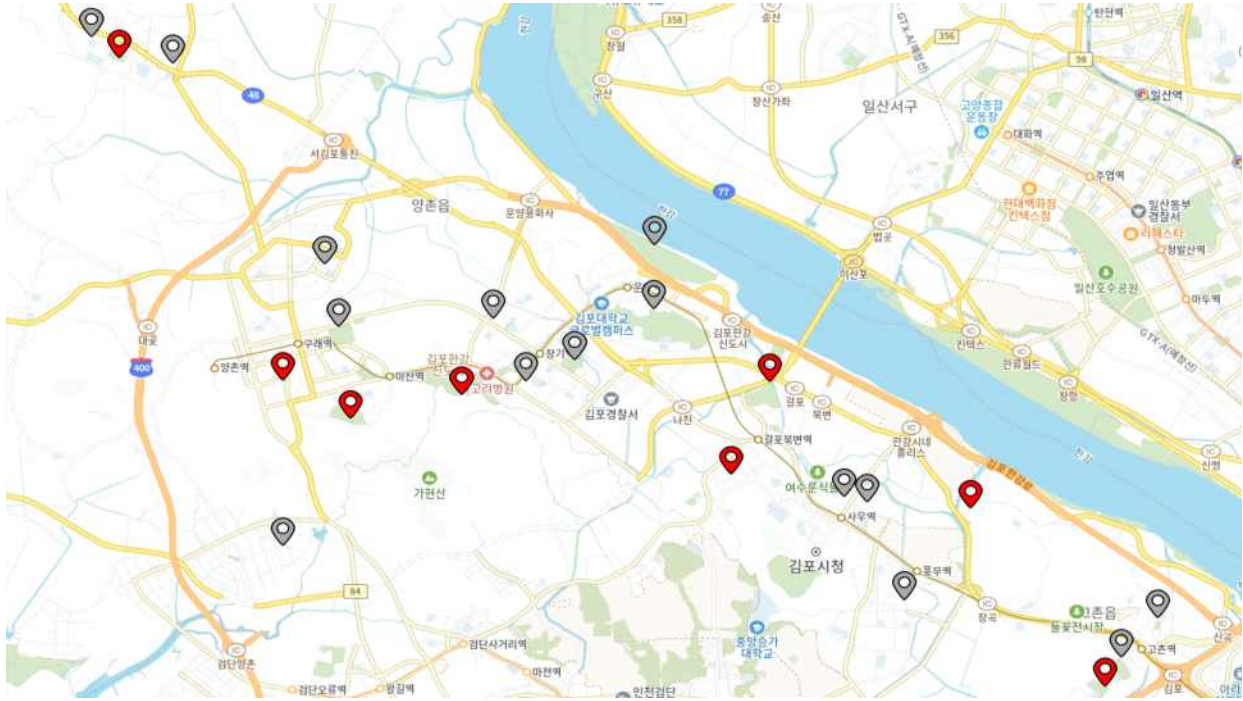
2023	-
2024	-
2025	- 공원 내 맨발걷기길 17개소(3.5km) 조성(신규 및 시설개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530,000	-	1,530,000	-	
2025	2,330,000	1,503,739	-	826,261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공원과	사업규모	맨발걷기길 8개소(L=1.1km)	이월 요구액 (천원)	8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사업위치	인향공원 등 8개소		
위치도	📍 2026년 신규(개선) 조성지, 📍 2025년 기 조성지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관리1팀장 이정호 공원관리2팀장 박종인 공원관리3팀장 안영빈	담당자	녹지7급 장소리 행정7급 오윤화 녹지7급 김정원	전화	4621 4627 4642
-----	-----	---	-----	----------------------------------	----	----------------------

아침도시 고다니 꽃길 산책로 조성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1. ~ 2026. 5.	사업위치	구래동 6876-1번지 일원
사업규모	1km		
사업목적	유수지 내 꽃길 산책로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	-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00,000	0	0	0	400,000	0	4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400,000				400,000		400,000	특조금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아침도시 고다니 산책로 조성	401-01 시설비	◎ 아침도시 고다니 꽃길 산책로 조성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50,000,000원 ○ 시설개선 공사비(시설물 설치, 보도 단차 개선) : 27,000원*10,000㎡ ○ 관목 보식 : 480,000원*100주 ○ 산책로 계절(봄 · 가을) 초화 식재 : 40,000원*400kg*2회	= 400,000 = 50,000 = 270,000 = 48,000 = 32,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총사업비 1,450백만원 중 400백만원이 배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수정 중에 있음
- 동절기 사업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주 공사를 적정 시기(2026년 2 ~ 5월)에 추진코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1. ~ 2023. 06. :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5. 08. ~ 2025. 10. : 특별조정교부금 결정, 실시설계 용역 수정
- 2025. 10. ~ 2026. 02.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 2026. 02. ~ 2026. 05.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0,000	-	-	4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생태공원 내 건물시설 유지관리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운양동 1246-1)
사업규모	3,633㎡		
사업목적	생태공원 내 에코센터 등 건물시설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4/4분기 ☒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항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 . 관리한다.	
	해당조례	김포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에코센터 운영관리조례	제6조
		시장은 생태공원 및 에코센터를 직접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 ·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13,200	976,460	876,460	0	100,000	0	0	670,785	
국비		0							
도비		0							
시비	13,200	976,460	876,460		100,000			670,785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670,785	
생태공원 내 건물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용역 : 41,985,000원*1개소 =	41,985	
		◎ 에코센터 외장재 철거 및 재시공 : 172,000원*2,500㎡ =	430,000	
		◎ 에코센터 전망대 골조 보수 및 도장 : 210,000원*880㎡ =	184,800	
		◎ 건설폐기물 처리 : 70,000원*200ton =	14,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11년 준공된 에코센터 외벽돌 균열 및 탈락에 따른 이용객 안전을 위한 외장재 교체 필요.
- 야생조류생태공원 이용객 및 근로자들 통행 시, 외장재 및 외골조에서 탈락할 수 있는 건축 부산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 사업임.
- 에코센터 운영 방식 검토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2026년 회계연도로의 사업 연장이 불가피함.

○ 동절기 사업 추진 시 기온·기상 여건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주 공사 기간을 적정 시기 (2026년 봄 ~ 가을)에 배정하기 위한 사업 기간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에코센터 외장재 및 전망대 외부 골조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2026. 04. ~ 2026. 10.: 에코센터 외장재 및 전망대 외부 골조 보수공사 추진
 - 2026. 11. ~ 2026. 12.: 준공 및 시공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에코센터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안전관리 - 에코센터 건축물 정기점검 - 에코센터 빗물 누수 보수공사 - 나눔목공소 인터넷, 전화기 신규 설치
2024	- 에코센터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안전관리 대행 용역 추진 - 에코센터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 소방시설 작동점검 결과에 따른 자재 구입
2025	- 에코센터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안전관리 대행 용역 추진 - 에코센터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실시(2회 추경) - 에코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실시 - 에코센터 계단보수 및 누수방수공사 실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7,750	66,515	-	1,235	
2024	13,200	12,711	-	489	
2025	976,460	192,712	-	738,748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공원과	사업규모	에코센터(3,633㎡)	이월 요구액 (천원)	670,785
부기명 (세부사업)	생태공원 내 건물시설 유지관리	사업위치	운양동 1246-1		
위치도					
현장사진					
	에코센터 외장재 현장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공원과	공원관리2팀장 박종인	담당자	녹지8급 윤호섭	전화	4628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산림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임야 6필지
사업규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임업인 3인)		
사업목적	임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관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국비100%)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산림청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474	1,456	0	0	0	0	1,456	982	
국비	474	1,456					1,456	982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56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01-14 기타보상금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294,400원*1인(임야면적: 3,132㎡) - 178,880원*1인(임야면적: 1,903㎡) - 982,300원*1인(임야면적: 10,450㎡)	= 295 = 179 = 982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산림복지과-30717(2025.10.15.)호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국비(100%)보조 내시
-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함에 따라 자격조건 및 이행점검 결과에 부합하는 임업인에 직불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작년 대비 지급대상자 2인-> 3인 증가로 증액되어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4.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임업인 3인)
 - 2025. 05.~ 06. : 신청사항 조사 및 심의 후 신청대상자 등록(임업인 3인)
 - 2025. 07.~ 09. :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임업인 3인)
 - 2025. 11.~ 12. : 예산 편성 및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업직불금 지급(임업인 4인, 1,949천원)
2024	· 임업직불금 지급(임업인 2인, 473천원)
2025	· 임업직불금 지급(임업인 3인, 1,456천원) 지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50	1,949	-	1	
2024	474	473	-	1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보호팀장 정승수	담당자	행정9급 김동휘	전화	2372
-----	-----	------------	-----	----------	----	------

대보천 도시숲 야간환경 개선사업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10.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67-7번지 일원
사업규모	1개소(10,000㎡)		
사업목적	대보천 도시숲 내 경관조명 설치하여 야간환경 개선, 범죄예방과 방법 강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해당조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 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400,000	0	0	0	400,000	0	4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400,000				400,000		400,000	특교세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대보천 도시숲 야간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 대보천 도시숲 야간환경 개선사업 1식	4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지역현안사업)로 교부결정되어,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함
- 25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실시하고, 26년 3월 사업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예산 이월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2025년 특별교부세 사업신청
 - 2025. 8. : 2025년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교부 결정
 - 2025. 9. :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5. 11.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6. 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2026. 2. : 사업 발주
 - 2026. 3. : 공사 착공
 - 2026. 6.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H)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H)	비고
				계 (B=C+D+E+F+G)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4회추경 (G)		
계		400,000	0	400,000	0	0	0	400,000	0	0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0		0							
	공사비	380,000		380,000				38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00,000	-	-	4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1개소(10,000㎡)	이월 요구액 (천원)	4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대보천 도시숲 야간환경 개선	사업위치	고촌읍 신곡리 767-7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주간				
	야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도시녹화팀장 최재명	담당자	녹지6급 박근혜	전화	2344
-----	-----	------------	-----	----------	----	------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태산패밀리파크 야간경관 조명 설치)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07. ~ 2025. 12.	사업위치	하성면 하성로 585 일원
사업규모	가로등 교체 및 수목·건물조명 설치(부지 88,165㎡)		
사업목적	공원 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 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00,000	0	0	200,000	0	0	186,043	
국비		0							
도비		100,000			100,000			93,022	
시비		100,000			100,000			93,021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186,043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401-01 시설비	· 야간경관 조명 설치 공사	= 186,043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 편성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
- 2025. 11월 공사 착공되어 동절기 기상 상황에 따라 공정 지연이 예상됨
- 동절기 기상악화시 기초공사, 배관·배선 공사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공사 추진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이 필요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20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2025. 07. 28. ~ 09. 15. : 실시설계용역
- 2025. 10. 23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25. 11. 04 : 업체 계약
- 2025. 11. 10. : 공사 착공
- 2026. 03.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0	13,957	-	186,043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가로등 교체 및 수목·건물조명 설치 (부지 88,165㎡)	이월 요구액 (천원)	186,043
부기명 (세부사업)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	사업위치	하성면 하성로 585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휴양팀장 김선희	담당자	녹지8급 김유진	전화	5988
-----	-----	------------	-----	----------	----	------

산림휴양시설 휴향기 맨발길 조성

- 명시이월 -

사업기간	2025. 7. ~ 2026. 10.	사업위치	태산패밀리파크(하성면 석탄리 1100) 수안산(대곶면 읍생리 산115)
사업규모	300m(태산패밀리파크 200m, 수안산 100m)		
사업목적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해 건강증진 및 심리적 안정,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4/4분기 ■이월		
법 적 근 거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임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이월요구액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편성액 (C)	1회 추경 편성액 (D)	2회 추경 편성액 (E)	3회 추경 편성액 (F)	4회추경 요구액 (G)		
계	0	200,000	0	0	0	200,000	0	200,000	
국비		0							
도비		0							
시비		200,000				200,000		200,000	특조금 140백만원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이월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산림휴양시설 휴향기 맨발길 조성	401-01 시설비	◎ 산림휴양시설 휴향기 맨발길 조성공사 ○ 실시설계용역비 : 7,000,000원 * 2개소 = 14,000 ○ 휴향기 맨발길 조성공사 : 93,000,000원 * 2개소 = 186,000	200,000	

□ 명시이월 사유 및 필요성

-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 편성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
- 2025년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2026년부터 공사 착공 예정
- 안전한 공사 추진 및 시공상태 점검, 피드백 반응을 위한 시범운영 등을 위하여 충분한 공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 : 경기도 휴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신청
 - 2025.07. : 대상지 확정 및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2025.09. ~ 12. : 실시설계용역 추진, 사전절차 이행(군보심의, 문화재심의)
 - 2026.02.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업발주
 - 2026.03. ~ 06. : 맨발걷기길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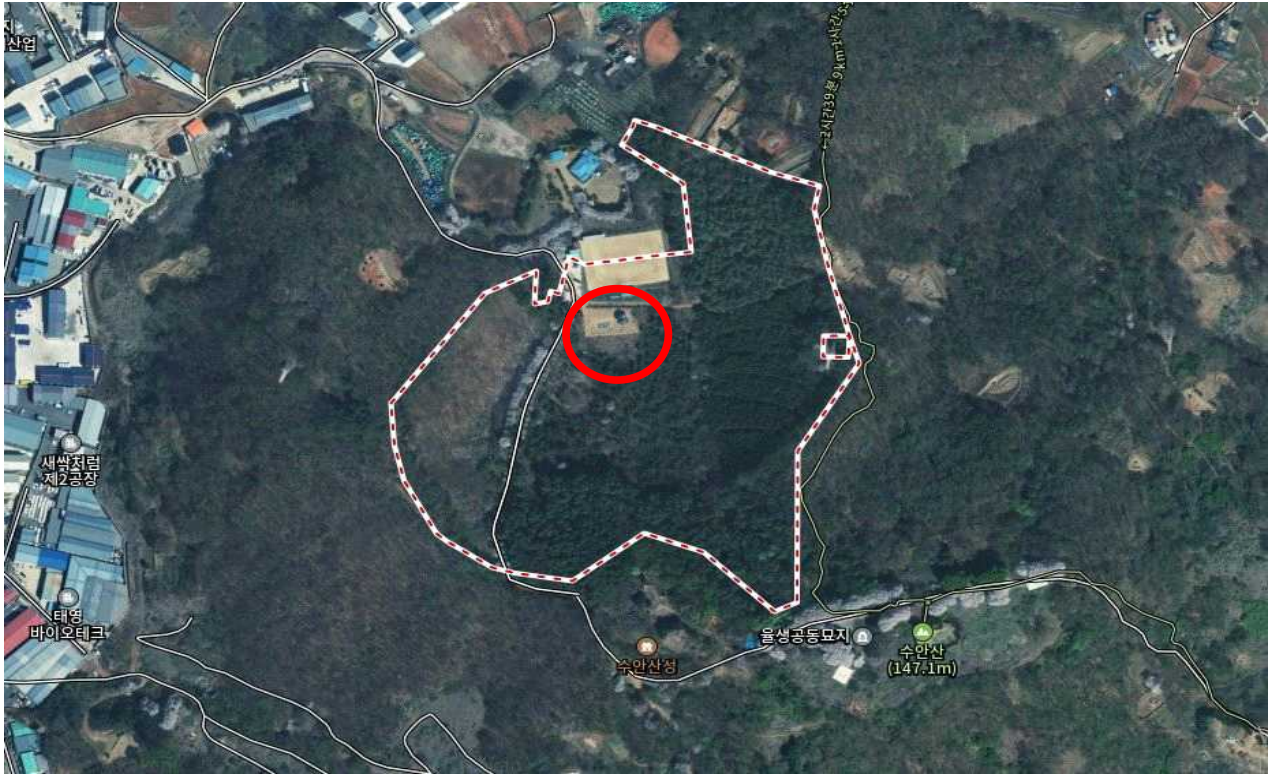
2023	
2024	
2025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0	-	-	200,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200m	이월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산림휴양시설 흡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위치	태산패밀리파크(하성면 석탄리 1100)		
위치도					
현장사진					

부서	산림과	사업규모	100m	이월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산림휴양시설 흡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위치	수안산(대곶면 읍생리 산115)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산림과	산림휴양팀장 김선희	담당자	행정7급 이종덕	전화	5986
-----	-----	------------	-----	----------	----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클린도시과



(클린도시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클린도시과
기 정 액	2,050천원	요 구 액	1,27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세외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임시적세외수입	6,700	3,275	1,000	1,000	1,275	-3,425	
기타수입/그외수입 ◎그외수입	6,700	3,275	1,000	1,000	1,275	-3,425	- 신용카드 결제 미귀속분 정산액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용역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시가지 도로
사업규모	폐토사 2,000톤		
사업목적	노면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부산물(폐토사 등)의 적정한 처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262,400	168,000	268,800	0	0	0	-100,800	-94,4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62,400	168,000	268,800				-100,800	-94,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800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용역	307-05 민간위탁금	·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용역 - (경정) 84,000원 × 2,000톤 - (기정) 84,000원 × 3,200톤 =	-100,800	

□ 예산요구 사유

-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 상시 운영에 따른 부산물(폐토사 등) 처리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도로노면청소차 운행 인력 휴직(2명) 등에 따른 폐토사 처리 물량 감소분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폐토사 처리용역 집행
 - 2025. 12. : 26년 폐토사 처리용역 계약
 - 2026. 01 ~ 12. : 폐토사 처리용역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폐토사 처리 : 3,190톤
2024	폐토사 처리 : 2,773톤
2025	폐토사 처리 : 1,477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56,000	223,890	-	32,110	
2024	262,400	198,589	-	63,811	
2025	268,800	108,275	-	160,5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클린도시과	클린도시팀장 김문숙	담당자	행정7급 김병기	전화	4523
-----	-------	------------	-----	----------	----	------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202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 도 과 · 정 수 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수 도 과



목 차

■ 수도권과 ■

[세 입]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	1	49	

[세 출]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권 개량사업 ...	2	53	

(수도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부 서 명	수도과
기 정 액	56,741,511천원	요 구 액	2,56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자본적수입	80,000	59,000	56,435	0	2,565	-21,000	
자본잉여금수입/시도비보조금수입 ◎복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도비)	80,000	59,000	56,435	0	2,565	-21,000	도비 내시서에 따른 금액 반영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사업기간	2025. 0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공용관 80세대, 옥내관 45세대		
사업목적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급수관을 개량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도법	제2조 제3항·제4항
		③·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① 조례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다만, 동일한 단지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용배관에 한하여 130제곱미터 이하 지원 기준에 따른다.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2.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4회 추경 요구액 (G)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계	160,000	118,000	112,870	0	0	0	5,130	-42,000	
국비		0						0	
도비	80,000	59,000	56,435				2,565	-21,000	
시비	80,000	59,000	56,435				2,565	-2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30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401-01 시설비	·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금 (경정)118,000,000원 - (기정)112,870,000원	= 5,130	

□ 예산요구 사유

○ 시·도비 보조금 가내시액 2,565천원 증가(56,435천원→59,000천원)에 따른 매칭 시비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시·도비 보조금 가내시액 2,565천원 증가(56,435천원→59,000천원)에 따른 매칭 시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4.11.반영	-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용배관 58세대, 옥내급수관 47세대 개량
2024	· 공용배관 238세대, 옥내급수관 18세대 개량
2025	· 공용배관 59세대, 옥내급수관 34세대 개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0,800	90,797	-	3	
2024	160,000	159,087	913	-	
2025	113,783	83,322	-	30,46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수도과	급수관리팀장 이기성	담당자	시설8급 김재형	전화	4423
-----	-----	------------	-----	----------	----	------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정 수 과



목 차

▣ 정수과 ▣

[세 입]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	9	61	

(정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부 서 명	정수과
기 정 액	878,840천원	요 구 액	24,350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사업수익	1,230	24,350	0	0	24,350	23,120	
영업외수익/기타임대수입 ◎기타 임대수입	380	16,588	0	0	16,588	16,20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영업외수익/불용품매각수입 ◎불용품 매각 수입	850	4,032	0	0	4,032	3,182	불용물품 매각대금
영업외수익/변상금및위약금수입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0	3,330	0	0	3,330	3,330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수입
영업외수익/전기손익수정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0	400	0	0	400	400	2024년 전기요금 등 과오납금 세입처리

202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하 수 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하 수 과



목 차

▣ 하수과 ▣

[세 입]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	17	107, 117	

[세 출]

	사 업 명	쪽	예산서 쪽	비고
1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08BTL) 임대료 반환 ...	18	121	
2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5BTL) 임대료 반환 ...	20	121	

(하수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부 서 명	하수과
기 정 액	93,037,590천원	요 구 액	-1,395,88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 수입

세입예산항목 항명/세입목 ◎부기명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세입예산액			4회추경 요구액 (E)	2024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증감 및 편성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3회추경 (D)			
사업수익	60,000	100,000	60,000		40,000	40,000	
영업외수익/기타영업외수익 ◎개인하수및가축관련 과태료	60,000	100,000	60,000		40,000	40,000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조수 증가에 따른 증액
자본적수입	20,514,226	21,754,112	31,697,000	-8,507,000	-1,435,888	1,239,886	
자본잉여금수입/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514,226	21,754,112	31,697,000	-8,507,000	-1,435,888	1,239,886	도시개발사업 미진행에 따른 감액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08BTL) 임대료 반환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북변,사우,감정,걸포,운양,고촌,통진,양촌,하성
사업규모	하수관로 109.6km, 맨홀펌프장 30개소, 배수설비 4,245가구		
사업목적	전문운영사의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생활하수 처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794	74,532	0	0	0	0	74,532	73,73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4,532	0	0	0	0	74,532	73,73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 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4,532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08BTL)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금액-확정금액) : 68,309천원 - 보조금 입금액 : 4,994,000천원 - 최종 확정금액 : 4,925,691천원 = 74,532 . 2024년 국고보조금 이자액 : 6,223천원		

□ 예산요구 사유

-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24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25.10.)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 12. :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08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반환
2024	- '08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반환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10,000	504,620	-	5,380	
2024	794,000	793,230	-	770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수과	하수운영팀장 이금석	담당자	공업8급 정진서	전화	4512
-----	-----	------------	-----	----------	----	------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15BTL) 임대료 반환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사업위치	원도심결포,운양,고촌,공곡,통진,양촌,석모대,곳초,원지리
사업규모	하수관로 85.1km, 맨홀펌프장 50개소, 배수설비 3,091가구		
사업목적	전문운영사의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생활하수 처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G)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3회 추경 (F)	4회 추경 (G)		
계	474	3,481	0	0	0	0	3,481	3,00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81	0	0	0	0	3,481	3,00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4회 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481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5BTL)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 2024년 국고보조금 이자액 : 3,481천원	= 3,481	

□ 예산요구 사유

- 2015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24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25.11.)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2년도 국고 초과집행분과 상계처리되어 반환금으로 미포함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반환금으로 산정하였음
- ※ 「'15년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국고보조규모 확정 통보(보고)[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552(2022.1.27)호]에 의거 국고보조를 변경(66.50%→68.37%)
- ※ '22년도 국고 초과집행액(87,708,200원)[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9556(2023.7.18.)호], '23년도 집행잔액 291,800원 상계 처리, '24년 집행잔액 1,291,800원 상계 예정(이자반납 별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향후계획
 - 2025. 12. :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15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반환
2024	- ‘15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반환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51,000	950,920	-	80	
2024	474,000	181,850	-	292,150	
2025	-	-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하수과	하수운영팀장 이금석	담당자	공업8급 정진서	전화	4512
-----	-----	------------	-----	----------	----	------